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7.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 문 위 원 정지은

목 차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개 요	3
(1) 편성배경	3
(2) 주요내용	3
2.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1) 국세 추가경정세입예산안	5
(2)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11
(3)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12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5)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6)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7)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8)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9)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
(10)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
3. 검토의견	23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검토	23
(2) 국세수입 경정의 필요성 검토	28
(3) 국세수입 경정규모의 적정성 검토	35
(4) 국공채발행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52
(5) 지방채 인수(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 편성 필요	56
(6) 국고채 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과다편성된 계획안 감액 필요	59
(7)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복권기금):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추가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64

(8)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내 집행가능소요만을 반영할 필요(국유재산관리기금)	73
(9) 국공채 발행수입(외국환평형기금): 기금의 원화재원 운용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79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개 요

(1) 편성배경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성장 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라 국세 수입도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투자 촉진,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30.5조원(세출 20.2조원 + 세입경정 10.3조원)으로 설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① 지출구조조정 5.3조원, ②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③ 외평채 조정 3.0조원, ④ 추가 국채발행 19.8조원을 제시하고 있음.

재원조달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채발행으로, 19.8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48.4% 대비 0.6%p 상승한 49.0%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조달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규모
① 지출구조조정	5.3
②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
③ 외평채 조정	3.0
④ 추가 국채발행	19.8
총 계	30.5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5.2조원은 경기진작에 활용하고, 5.0조원은 민생 안정, 10.3조원은 세입경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단위: 조원)

중점 사업 내용	금액
① 경기진작	15.2
▪ 소비여력 보강 (민생회복소비쿠폰 10.3조원, 지역사랑상품권 0.6조원 등)	11.3
▪ 건설경기 활성화 (PF 사업장 지원 0.8조원, SOC 조기투자 1.4조원 등)	2.7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벤처·창업기업 지원 0.9조원, AI생태계 조성 0.2조원 등)	1.2
② 민생 안정	5.0
▪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0.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0.7조원 등)	1.4
▪ 고용안전망 강화 (구직급여 확대 1.3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0.2조원 등)	1.6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0.4조원, 돌봄·의료지원 확대 0.1조원 등)	0.7
▪ 지방재정 보강 등	1.3
③ 세입경정	10.3
총 계	30.5

자료: 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국세 추가경정세입예산안

가) 국세수입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예산안은 372조 850억원으로¹⁾, 2025년 본예산 382조 4,296억원²⁾ 대비 10조 3,446억원을 감액(△2.7%)한 것이고, 2024년도 실적 336조 5,324억원 대비 35조 5,526억원이 증가(10.6%)한 규모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61조 4,604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371조 8,050억원 대비 10조 3,446억원 감소(△2.8%)한 규모이고 2024년 징수실적 326조 1,793억원 대비 35조 2,811억원 증가(10.8%)한 규모임.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경정 없이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함.

정부는 ‘24년 법인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24년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세 둔화, ‘24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유류세 및 자동차·발전연료 탄력세를 연장 등 민생지원 시행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국세수입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10조 3,446억원 감액경정하려는 것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예산안 372.1조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국세세입 예산안 361.5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주세) 3.2조원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농어촌특별세) 7.4조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포함한 전체 국세수입 예산안 규모를 기재하였음.

2) 2025년 본예산 국세수입은 382조 4,296억원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의 변동은 없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현재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억원, %)

세 목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대비	
		본예산	실적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총 국 세	3,440,711	3,673,140	3,365,324	3,824,296	3,720,850	355,526	10.6	△103,446	△2.7
[일반회계]	3,339,396	3,561,182	3,261,793	3,718,050	3,614,604	352,811	10.8	△103,446	△2.8
◇내 국 세	3,060,595	3,216,136	2,982,594	3,381,292	3,291,519	308,925	10.4	△89,773	△2.7
○소 득 세	1,158,330	1,257,605	1,174,180	1,268,192	1,268,192	94,012	8.0	-	-
○법 인 세	804,195	776,649	625,113	882,544	835,671	210,558	33.7	△46,872	△5.3
○상속세 및 증여세	146,341	146,566	152,981	145,059	154,437	1,456	1.0	9,378	6.5
○부가가치세	737,749	814,068	822,358	876,388	833,292	10,934	1.3	△43,095	△4.9
○개별소비세	88,209	101,945	86,566	96,663	87,479	913	1.1	△9,184	△9.5
○증권거래세	60,803	53,829	47,602	38,454	38,454	△9,148	△192	-	-
○인 지 세	7,969	8,505	8,460	8,836	8,836	376	4.4	-	-
○과년도수입	56,999	56,969	65,334	65,156	65,156	△178	△0.3	-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6	153,258	113,891	151,048	140,012	26,121	22.9	△11,036	△7.3
◇관 세	72,883	89,065	69,723	84,093	84,093	14,370	20.6	-	-
◇교 육 세	51,516	61,625	53,738	60,402	57,765	4,027	7.5	△2,637	△4.4
◇종합부동산세	45,965	41,098	41,847	41,215	41,215	△632	△1.5	-	-
[특별회계]	101,314	111,958	103,531	106,246	106,246	2,715	2.6	-	-
◇주 세	35,686	35,759	33,282	32,093	32,093	△1,189	△3.6	-	-
◇농어촌특별세	65,628	76,199	70,249	74,153	74,153	3,904	5.6	-	-

자료: 기획재정부

나) 세목별 경정내역 및 주요내용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개 세목 중에서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5개 세목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총 11조 2,824억원 감액경정하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 1개 세목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총 9,378억원 증액경정하여 합계 총 10조 3,446억원 감액경정하여 편성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목별 경정내역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본예산 (A)	제2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감액 경정	1	법인세	882,544	835,671	△46,872	△5.3
	2	부가가치세	876,388	833,292	△43,095	△4.9
	3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	140,012	△11,036	△7.3
	4	개별소비세	96,663	87,479	△9,184	△9.5
	5	교육세	60,402	57,765	△2,637	△4.4
증액 경정	6	상속세 및 증여세	145,059	154,437	9,378	6.5
합 계			2,212,104	2,108,656	△103,446	△4.7

자료: 기획재정부

구체적인 세목별 추가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는 2025년 본예산 대비 4조 6,872억원 감액(△5.3%)하여 83조 5,671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2024년 징수실적 대비 21조 558억원 증가(33.7%)한 것임.

법인세 신고분은 2025년 본예산 대비 6조 1,965억원 감액(△9.4%)하여 59조 6,605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2024년 징수실적 대비 20조 2,443억원 증가(51.4%)한 것임.

① '24년 법인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24년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³⁾되어 법인세 신고세액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한 것을 반영하는 한편, ② 상반기 납부세액 예정치를 근거로 8월 예정된 중간예납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것임.

3) '24년 코스피+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 (상반기) 232% → (하반기) 86%

법인세 원천분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5,092억원 증액(6.7%)하여 23조 9,066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4년 징수실적 대비 8,115억원 증가(3.5%)한 것임. 이는 8월 중간예납 전망 원천징수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법인세의 경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실적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인세	804,195	776,649	625,113	882,544	835,671	210,558	33.7	△46,872	△5.3
신고분	603,768	568,333	394,161	658,570	596,605	202,443	51.4	△61,965	△9.4
원천분	200,427	208,316	230,951	223,974	239,066	8,115	3.5	15,092	6.7

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는 2025년 본예산 대비 4조 3,095억원 감액(△4.9%)하여 83조 3,292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4년 징수실적 대비 1조 934억원 증가(1.3%)한 것임.

'24년 및 '25년 1분기 정치적 불안정 등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25년 부가가치세 실적 부진⁴⁾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25년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 전망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영한 것임

[부가가치세의 경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실적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부가가치세	737,749	814,068	822,358	876,388	833,292	10,934	1.3	△43,095	△4.9

자료: 기획재정부

4) 소매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4.4Q) △2.0 ('25.1Q) △0.3

5월 누계 부가세 실적: ('24) 38.8 ('25) 38.4 <△0.4>

5) 소비자 심리지수: ('24.12) 88.2 ('25.1) 91.2 (2) 95.2 (3) 93.4 (4) 93.8 (5) 101.8

'25년 민간소비 증가율(%): ('24.8, 정부) 2.3 → ('25.5, 한은) 1.1 (상반기 0.8% → 하반기 1.4%)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1,036억원 감액(△7.3%)하여 14조 12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4년 징수실적 대비 2조 6,121억원 증가(22.9%)한 것임.

이는 '25년 휘발유·경유 수요전망 변경⁶⁾,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⁷⁾ 및 부분환원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감액함.

개별소비세는 2025년 본예산 대비 9,184억원 감액(△9.5%)하여 8조 7,479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4년 징수실적 대비 913억원 증가(1.1%)한 것임.

이는 2025년 에너지 수요 전망⁸⁾ 변경 및 자동차·발전연료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⁹⁾ 조치 및 적용 등을 감안하여 감액함.

교육세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637억원 감액(△4.4%)하여 5조 7,765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4년 징수실적 대비 4,027억원 증가(7.5%)한 것임.

이는 202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망 변경¹⁰⁾ 등을 감안하여 감액함.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경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실적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6	153,258	113,891	151,048	140,012	26,121	22.9	△11,036	△7.3
개별소비세	88,209	101,945	86,566	96,663	87,479	913	1.1	△9,184	△9.5
교육세	51,516	61,625	53,738	60,402	57,765	4,027	7.5	△2,637	△4.4

자료: 기획재정부

6) 휘발유 소비 전망(천kℓ, 예경연): (예산 전제) 14,520 → ('25.2 전망) 15,660

경유 소비 전망(천kℓ, 예경연): (예산 전제) 24,674 → ('25.2 전망) 22,655

7)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1~4월) △15/△23 → (5~8월) △10/△15

8) 발전용 유연탄(백만톤): (예산 전제) 57.5 → ('25.2 전망) 62.0

발전용 LNG(백만톤): (예산 전제) 24.0 → ('25.2 전망) 23.0

9) 발전연료/자동차 탄력세율(%): (연중) △15/△30

10) 교통세 △1.1조의 15%, 자동차 개소세 △0.6조의 △30%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5년 본예산 대비 9,378억원 증액(6.5%)하여 15조 4,437억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2024년 징수실적 대비 1,456억원 증가(1.0%)한 것임.

① 상속세는 2025년 본예산 대비 9,378억원 증액(11.1%)하여 9조 4,015억원으로 결정하였는데, 2024년 징수실적 대비 2,425억원 감소(△2.5%)한 것임. ② 증여세는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함

이는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실적 증가 및 2~3월 고액자산가 사망에 따른 우발세수 등을 감안하여 증액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4년 실적대비		25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실적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상속세 및 증여세	146,341	146,566	152,981	145,059	154,437	1,456	1.0	9,378	6.5
상속세	85,444	85,947	96,440	84,637	94,015	△2,425	△2.5	9,378	11.1
증여세	60,896	60,619	56,542	60,422	60,422	3,881	6.9	-	-

자료: 기획재정부

(2)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73조 5,886억원 대비 12조 2,460억원(2.6%) 증가한 485조 8,346억원임.

국세수입 중 내국세가 8조 9,773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조 1,036억원, 교육세가 2,637억원 감액되었음.

세외수입 중 기금예수금이 22조 5,907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일반회계(전체)	4,638,148	4,735,886	4,858,346	122,460	2.6
□ 일반회계(추경 대상)	2,979,334	3,062,397	3,184,857	122,460	4.0
○ 국세수입	2,151,681	2,151,681	2,048,235	△103,326	△4.8
- 내국세	1,940,231	1,940,231	1,850,458	△89,773	△4.6
-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	151,048	140,012	△11,036	△7.3
- 교육세	60,402	60,402	57,765	△2,637	△4.4
○ 세외수입	827,653	910,716	1,136,622	225,907	24.8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기금예수금)	827,653	910,716	1,136,622	225,907	24.8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조 2,269억원보다 8,789억원(2.0%) 증가한 44조 1,059억원임.

세출예산안에서는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2,711억원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6,648억원을 증액하였고, 각 기금에서 세출예산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① 대외경제협력기금 400억원, ②기후대응기금 17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2025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8411-883)	13,174	13,174	12,774	△400	△3.0
기후대응기금 전출 (8411-889)	13,312	13,312	13,142	△170	△1.3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289,924	291,170	293,881	2,711	0.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 (8010-803)	49,867	55,580	62,229	6,648	12.0
합계(추경 대상)	366,277	373,236	382,026	8,789	2.4
총계(전체)	409,310	432,269	441,059	8,789	2.0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조 6,677억원 대비 7,114억원(4.8%) 증가한 15조 3,791억원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① 일반회계전입금(지역지원계정)이 6,649억원 증액되고, ② 특별회계전입금(지역지원계정)이 466억원 증액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¹¹⁾.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세 입	139,089	146,677	153,791	7,114	4.8
○ 지역자율계정	32,132	32,132	32,132	-	-
○ 지역지원계정	103,222	110,811	117,924	7,114	6.4
- 일반회계전입금	49,867	55,580	62,229	6,649	12.0
- 특별회계전입금	31,121	32,997	33,462	466	1.4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3,163	3,163	3,163	-	-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572	572	572	-	-
□ 세 출	-	-	-	-	-
○ 지역자율계정	-	-	-	-	-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

(5)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른 복권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8조 8,685억 원에서 변동 없음.

복권기금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①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가 26억원 감액되었고, ②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구축이 26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복권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 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553	1,403	1,378	△26	△1.8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13	13	39	26	200.0
합계(추경 대상)	1,566	1,416	1,416	-	-
합계(전체)	88,685	88,685	88,685	-	-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6)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314조 4,852억원에서 23조 9,252억원(7.6%) 증가한 338조 4,104억원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의 수입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대비
 ① 국공채발행수입이 22조 7,394억원, ②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이 2,711억원,
 ③ 기금 예탁이자수입이 6억원, ④ 기금 예수금이 9,021억원, ⑤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이 120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 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괄 계 정	국공채발행수입	1,975,525	2,070,650	2,298,045	227,394	11.0
	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289,924	291,170	293,881	2,711	0.9
	기금예탁이자수입	69,502	69,592	69,598	6	0.0
	기금예수금	218,906	218,906	227,926	9,021	4.1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1,448	1,478	1,598	120	8.1
	합계(총괄계정 전체)	3,045,645	3,142,197	3,381,449	239,252	7.6
용자계정		2,655	2,655	2,655	-	-
합계(전체)		3,048,300	3,144,852	3,384,104	239,252	7.6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대비
 ① 일반회계 예탁이 22조 5,907억원, ② 기타기금 예탁이 509억원, ③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이 108억원, ④ 국고채 이자상환이 2,729억원, ⑤ 지방채인수(용자)가
 1조원 증액되었음.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괄 계정	일반회계 예탁	827,653	910,716	1,136,622	225,907	24.8
	기타기금 예탁	444,772	450,755	451,264	509	0.1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048	9,048	9,156	108	1.2
	국고채이자상환	299,779	301,206	303,935	2,729	0.9
	지방채인수(융자)	100	2,100	12,100	10,000	476.2
	합계(총괄계정 전체)	3,045,645	3,142,197	3,381,449	239,252	7.6
융자계정		2,655	2,655	2,655	-	-
합계(전체)		3,048,300	3,144,852	3,384,104	239,252	7.6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잔액은 제2회 추경 기준 847조 9,101억원에서 22조 5,907억원 증가한 870조 5,0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 규모는 1280.8조원에서 1,300.6조원으로 19.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 잔액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추경	
						제1회	제2회(안)
발행	882,000	862,000	554,413	966,383	827,653	910,716	1,136,622
원금상환	25,732	35,550	11,414	-	-	-	-
이자상환	90,049	104,558	59,056	181,486	289,924	291,170	293,881
잔액	5,231,445	6,057,894	6,600,894	7,567,277	8,394,930	8,479,101	8,705,007

자료: 기획재정부

[추경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화]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증감 (B-A)
		당초	추경		
			제1회(A)	제2회(안)(B)	
국가채무 (GDP 대비, %)	1,175.2 (46.0)	1,273.3 (48.1)	1,280.8 (48.4)	1,300.6 (49.0)	19.8 (0.6%p)

자료: 기획재정부

제2회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Delta 2.2\%$ 로 지난 제1회 추경 ($\Delta 1.3\%$) 기준 1.0%p 악화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지난 제1회 추경 (48.4%) 보다 0.6%p 악화됨.

[추경예산안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제1회 대비 (C-B)	당초 대비 (C-A)
		당초 (A)	추경			
			제1회(B)	제2회(안) (C)		
I. 총수입	594.5	651.6	652.8	642.4	△10.4	△9.1
II. 총지출	638.0	673.3	687.1	702.0	14.9	28.7
III.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43.5 (△1.7)	△21.7 (△0.8)	△34.3 (△1.3)	△59.6 (△2.2)	△25.3 (△1.0%P)	△37.8 (△1.4%P)
IV. 국가채무 (GDP 대비, %)	1,175.2 (46.0)	1,273.3 (48.1)	1,280.8 (48.4)	1,300.6 (49.0)	19.8 (0.6%P)	27.3 (0.9%P)

자료: 기획재정부

(7)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2조 3,527억원에서 400억원(△1.7%) 감소한 2조 3,127억원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수입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 전입이 400억원 감액되었음.

[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수입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전입금	13,174	13,174	12,774	△400	△3.0
합계(추경 대상)	13,174	13,174	12,774	△400	△3.0
합계(전체)	23,527	23,527	23,127	△400	△1.7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① 중남미차관이 80억원, ②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이 320억원 감액되었음.

[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중남미차관(융자)(ODA)	381	381	301	△80	△21.0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7,752	5,485	5,165	△320	△5.8
합계(추경 대상)	8,133	5,866	5,466	△400	△6.8
합계(전체)	23,527	23,527	23,127	△400	△1.7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8)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2조 6,217억원에서 170억원(△0.6%) 감소한 2조 6,047억원임.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전입금이 170억원 감액되었음.

[2025년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경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전입금	13,312	13,312	13,142	△170	△1.3
합계(전체)	26,217	26,217	26,047	△170	△0.6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사업이 170억원 감액되었음

[2025년 기후대응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304	304	134	△170	△55.9
합계(추경 대상)	304	304	134	△170	△55.9
합계(전체)	26,217	26,217	26,047	△170	△0.6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9)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140조 2,894억원에서 3조원(△2.1%) 감소한 137조 2,894억원임.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국공채발행수입이 3조원 감액되었음.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 감액한 것에 기인함.

[2025년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국공채발행수입	216,560	216,560	186,560	△30,000	△13.9
합계(전체)	1,402,894	1,402,894	1,372,894	△30,000	△2.1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① 국공채이자상환이 510억원, ② 한국은행 예치가 2조 9,490억원 감액되었음.

[2025년 외국환평형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국공채 이자상환	6,556	6,556	6,046	△510	△7.8
한국은행 예치	489,167	489,167	459,677	△29,490	△6.0
합계(추경 대상)	495,724	495,724	465,723	△30,000	△6.1
합계(전체)	1,402,894	1,402,894	1,372,894	△30,000	△2.1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10)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기존의 3조 4,820억원에서 4억원(0.0%) 증가한 3조 4,824억원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기금예탁이자수입이 4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1,174	1,174	1,178	4	0.3
합계(추경 대상)	1,174	1,174	1,178	4	0.3
합계(전체)	34,820	34,820	34,824	4	0.0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대비 ① 비축토지 매입이 300억원, ② 비통화금융기관예치가 441억원 감액되었고, ③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 99억원, ④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이 99억원,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이 196억원, ⑤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이 50억원, ⑥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이 300억원 증액되었음.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A)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공 용 재 산 취 득 사 업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125	180	278	99	54.8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515	619	718	99	16.1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76	176	373	196	111.4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69	69	119	50	73.0
	비축토지매입	1,000	1,000	700	△300	△3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13,500	13,500	13,800	300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412	10,412	9,971	△441	△4.2
합계(추경대상)		25,797	25,955	25,959	4	0.0
합계(전체)		34,820	34,820	34,824	4	0.0

주: 총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검토

< 현 황 >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과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총 30.5조원(세출 20.2조원 + 세입조정 10.3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지난 5월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제출된 것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조원)

중점 사업 내용	정부안	확정	증감
① 재해·재난 대응	3.2	3.3	+0.1
▪ 산불피해 복구	1.4	1.4	+0.03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9	1.9	+0.09
② 통상 및 AI 지원	4.4	4.5	+0.1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2.1	+0.01
▪ AI 생태계 혁신	1.8	1.9	+0.1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0.5	+0.02
③ 민생 지원	4.3	5.1	+0.8
▪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2.6	2.6	-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2.0	+0.4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0.6	+0.4
④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0.2	1.0	+0.9
▪ 건설경기 보강	-	0.8	+0.8
▪ APEC 정상회의 등	0.2	0.2	+0.04
⑤ 국회 감액(국고채 이자 등)	-	△0.2	△0.2
총 계	12.2	13.8	+1.6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최근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 민생경제 여건 악화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각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국가재정법」 제89조¹²⁾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경기 부진 심화에 따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 또는 경기침체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대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해외 주요기관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금융 변동성 확대 및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보다 0.2%p ~ 0.5%p 하향 조정하였음.

[주요 기관의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현황]

(단위: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시점	수정 전망치	시점	변동폭
OECD	3.1	'25.3	2.9	'25.6	△0.2
WB	2.7	'25.1	2.3	'25.6	△0.4
IMF	3.3	'25.1	2.8	'25.4	△0.5

자료: 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이에 함께 국내외 주요기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도 연초 수정 전망 대비 0.5%p ~ 1.0%p 추가 하향 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0% 이하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현황]

(단위: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수정 전망치					
	성장률	시점	성장률	시점	변동폭	성장률	시점	작전전망대비 변동폭
한국은행	1.9	'24.11	1.5	'25.2	△0.4	0.8	'25.5	△0.7
KDI	2.0	'24.11	1.6	'25.2	△0.4	0.8	'25.5	△0.8
IMF	2.2	'24.10	2.0	'25.1	△0.2	1.0	'25.4	△1.0
OECD	2.1	'24.12	1.5	'25.3	△0.6	1.0	'25.6	△0.5

자료: 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기여도가 전기보다 축소된 것에 기인하여 내수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확대되면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0.2% 감소한 상황으로, 2024년 2분기 이후 연속으로 0%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기별 국내총생산 증감률]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23				2024 ^P				2025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 내 총 생 산 (G D P)	0.4 (1.3)	0.7 (1.2)	0.8 (1.5)	0.5 (2.2)	1.2 (3.4)	-0.2 (2.2)	0.1 (1.4)	0.1 (1.1)	-0.2	(0.0)
민 간 소 비	0.6	0.0	0.1	0.3	0.5	0.0	0.4	0.2	-0.1	(0.6)
정 부 소 비	0.9	-1.9	0.6	0.3	0.9	0.8	0.9	0.4	0.0	(2.3)
건 설 투 자	-0.2	-0.5	1.5	-3.9	4.5	-3.3	-3.6	-4.1	-3.1	(-13.3)
설 비 투 자	-1.7	0.5	-3.6	2.2	-1.0	0.0	5.4	0.8	-0.4	(5.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3	0.7	0.7	-0.5	1.9	-1.3	-0.2	0.9	1.5	(0.9)
재 고 증 감	0.7	-0.7	-0.4	-0.1	-0.4	0.2	0.3	0.1	-0.1	(0.5)
수 출	3.6	1.3	2.5	3.4	1.3	1.5	0.0	0.6	-0.6	(1.5)
수 입	4.0	-2.5	0.1	1.9	-0.3	1.6	1.3	0.2	-1.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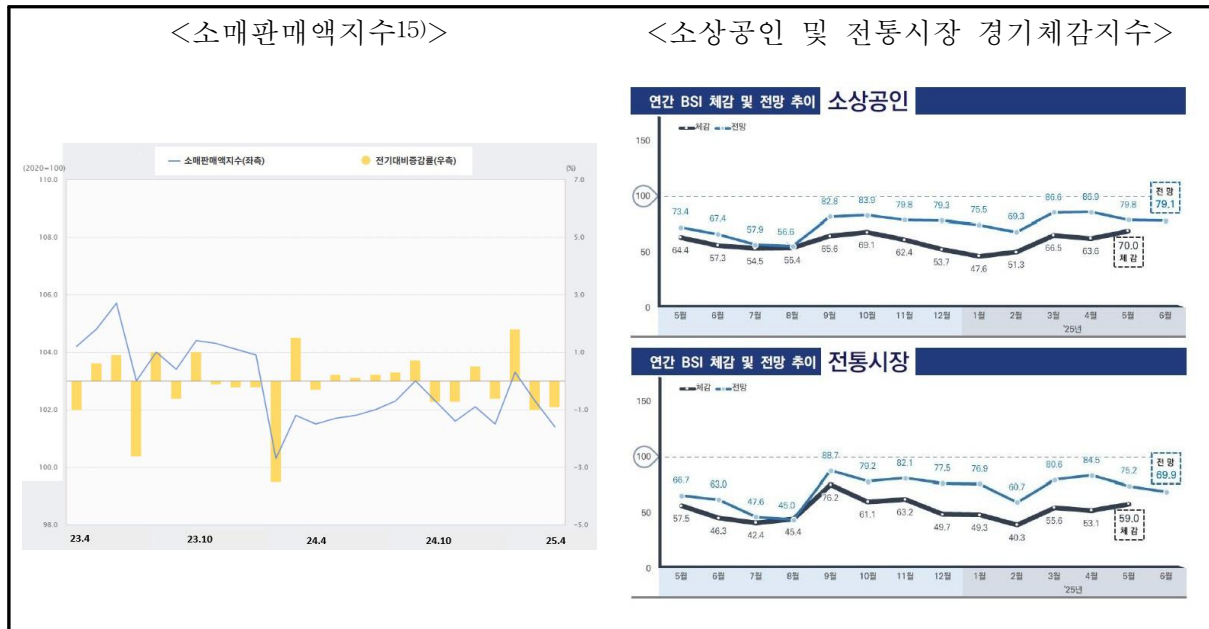
주: 2010년 연쇄가격 기준 /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25. 6. 5.

최근 소비심리 위축은 완화되는 경향¹³⁾을 보이나,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상품 소비 회복이 지연되어 소매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숙박·음식점업(-2.5%), 교육서비스업(-0.9%) 등 소비와 밀접한 주요 서비스업 생산이 부진하는 등 소비가 여전히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5월 경기동향조사¹⁴⁾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5월 경기동향 체감 BSI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6월 경기동향 전망은 하락하여 향후 경기 악화에 대한 체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매판매액지수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



자료: 통계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 한국은행의 2025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8로 전월비대 8.0p 상승하였음.
- 1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월 17개 시도 3700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경기 체감 및 경기 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BSI 지수가 100 초과인 경우 경기 호전, 100 미만인 경우 경기 악화를 의미함.
- 15)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최종수요자에게 판매된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임.

그 밖에도 5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9만명(△0.9%) 감소¹⁶⁾ 하였고, 2025년 1/4분기 소득분위별¹⁷⁾ 가계소득 중 1분위의 가계소득과 1~3분위의 사업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경기 부진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5년 1/4분기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구분	(단위: 천원, %, %p, 전년동분기대비)									
	2025. 1/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1,140	-1.5	2,759	1.9	4,391	2.9	6,578	5.8	11,884	5.6
경상소득	1,126	-1.9	2,729	1.4	4,340	2.7	6,494	5.7	11,572	5.3
근로소득	241	-0.1	1,416	2.2	2,646	1.5	4,350	4.8	8,402	4.1
사업소득	94	-7.7	439	-11.3	807	-5.3	1,230	3.8	1,939	11.2
재산소득	14	-29.3	40	30.4	44	-1.6	49	17.1	154	5.2
미전소득	778	-1.0	835	6.8	843	16.5	865	12.8	1,076	4.2
비경상소득	14	42.4	29	117.0	52	21.5	85	18.7	312	16.2

자료: 통계청,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5. 5. 29.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소비 촉진, 건설투자 확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의 제도적 취지를 바탕으로 시급성 및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특히, 추경안의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편성된 사업을 추가·확대하고 있어 시급성 및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16) 통계청, 2025년 5월 고용동향

17)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시 적용하고 있는 소득5분위는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가구임.

(2) 국세수입 경정의 필요성 검토

< 현 황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감액경정은 2000년 이후 일곱번째 감액경정으로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감액경정(11.5조원)보다 1.2조원 적은 규모임.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세입경정) 편성 현황]

(단위: 조원)

연 도	제출일	의결일	본예산 (A)	추경예산 (B)	경정액	징수실적 (C)	실적본예산 (C-A)	실적-추경 (C-B)
2003	6.5	7.15	113.6	114.9	+1.3	114.7	1.1	△0.2
2005	9.29	11.16	130.6	127.0	△3.6	127.5	△3.1	0.5
2009	3.30	4.29	175.4	164.0	△11.4	164.5	△10.9	0.5
2013	4.18	5.7	216.4	210.4	△6.0	201.9	△14.5	△8.5
2015	7.6	7.24	221.1	215.7	△5.4	217.9	△3.2	2.2
2016	7.26	9.2	222.9	232.7	+9.8	242.6	19.7	9.9
2017	6.7	7.2	242.3	251.1	+8.8	265.4	23.1	14.3
2020	① 3.5 ③ 6.4	① 3.17 ③ 7.3	292.0	① 291.2 ③ 279.7	① △0.8 ③ △11.5	285.5	③ △6.5	③ 5.8
2021	7.2	7.24	282.7	314.3	+31.5	344.1	61.3	29.8
2022	5.13	5.29	343.4	396.6	+53.3	395.9	52.6	△0.7
2025	6.23	-	382.4	372.1(안)	△103(안)	-	-	-

주: 원괄호는 해당 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경정을 실시한 추가경정예산 회차를 의미함.

음영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세수입 감액경정이 포함된 해를 표시함.

정부는 국세징수 실적 및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 대비 세수감소 전망이 비교적 확실한 5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감액하고 세수증가 전망이 비교적 확실한 상속세를 증액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밝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목별 경정 내역]

(단위: 억원, %)

세 목	2024년		2025년		24년 실적 대비		25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실적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총 국 세	3,673,140	3,365,324	3,824,296	3,720,850	355,526	10.6	△103,446	△2.7
일 반 회 계	3,561,182	3,261,793	3,718,050	3,614,604	352,811	10.8	△103,446	△2.8
○ 내 국 세	3,216,136	2,982,594	3,381,292	3,291,519	308,926	10.4	△89,773	△2.7
1. 소 득 세	1,257,605	1,174,180	1,268,192	1,268,192	94,013	8.0	-	-
신 고 분	454,717	362,116	414,698	414,698	52,582	14.5	-	-
종합소득	230,552	195,264	220,582	220,582	25,318	13.0	-	-
양도소득	224,165	166,852	194,116	194,116	27,264	16.3	-	-
원 천 분	802,888	812,063	853,494	853,494	41,431	5.1	-	-
이자소득	49,128	71,958	63,121	63,121	△8,837	△12.3	-	-
배당소득	39,038	42,680	46,757	46,757	4,077	9.6	-	-
사업소득	47,478	46,828	51,060	51,060	4,232	9.0	-	-
근로소득	620,327	610,491	647,310	647,310	36,819	6.0	-	-
연금소득	6,004	5,591	6,914	6,914	1,323	23.7	-	-
기타소득	27,064	23,533	26,647	26,647	3,114	13.2	-	-
퇴직소득	13,849	10,982	11,685	11,685	703	6.4	-	-
2. 법 인 세	776,649	625,113	882,544	835,671	210,558	33.7	△46,872	△5.3
신 고 분	568,333	394,161	658,570	596,605	202,443	51.4	△61,965	△9.4
원 천 분	208,316	230,951	223,974	239,066	8,115	3.5	15,092	6.7
3 상속세 및 증여세	146,566	152,981	145,059	154,437	1,456	1.0	9,378	6.5
상 속 세	85,947	96,440	84,637	94,015	△2,425	△2.5	9,378	11.1
증 여 세	60,619	56,542	60,422	60,422	3,881	6.9	-	-
4. 부가가치세	814,068	822,358	876,388	833,292	10,934	1.3	△43,095	△4.9
5. 개별소비세	101,945	86,566	96,663	87,479	913	1.1	△9,184	△9.5
6. 증권거래세	53,829	47,602	38,454	38,454	△9,148	△19.2	-	-
7. 인 지 세	8,505	8,460	8,836	8,836	376	4.4	-	-
8. 과년도수입	56,969	65,334	65,156	65,156	△178	△0.3	-	-
9. 교 통 세	153,258	113,891	151,048	140,012	26,121	22.9	△11,036	△7.3
10. 관 세	89,065	69,723	84,093	84,093	14,370	20.6	-	-
11. 교 육 세	61,625	53,738	60,402	57,765	4,027	7.5	△2,637	△4.4
12 종합부동산세	41,098	41,847	41,215	41,215	△632	△1.5	-	-
특 별 회 계	111,958	103,531	106,246	106,246	2,715	2.6	-	-
13. 주 세	35,759	33,282	32,093	32,093	△1,189	△3.6	-	-
14. 농 특 세	76,199	70,249	74,153	74,153	3,904	5.6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경정은 세수여건 악화 등을 반영한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유지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보장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4월까지의 국세수입 징수실적이 낙관적이지 않고, 내수회복 지연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향후 세입여건 또한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세수입 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수입 징수실적은 142.2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382.4조 대비 37.2% 수준임. 이는 전년동기 대비 16.6조원 증가한 실적이지만,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기 평균 국세수입 누적 진도율 38.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이 본예산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0년~2025년 4월 누적 국세수입 징수실적 및 진도율]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평균	2025년
징수실적	1,006,642	1,333,987	1,679,040	1,339,849	1,255,749	1,323,053	1,422,091
진도율	35.3	38.8	42.4	38.9	37.3	38.3	37.2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세목별로 4월까지의 국세수입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법인세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¹⁸⁾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6.5조원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환율¹⁹⁾ 상승 등에 따른 수입분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0.9조원 증가하였으며, 소득세는 근로자 수²⁰⁾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0.6조원 증가하였으나, 진도율 기준으로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최근 5년 평균 국세수입 누적 진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²¹⁾.

18) 코스피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23) 38.7 → ('24) 106.2 <+67.5, +174.4%>

19) 환율(평잔): ('24.4) 1,368원 → (25.4) 1,444원

20) 상용근로자수: ('24.3) 1,636만명 → ('25.3) 1,660만명 <+23만명, +1.4%>

21)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이 2024년 예산 367.3조원보다 15.1조원이 많은 382.4조원임을 감안한다면, 전년 대비 증가분이 아닌 진도율로 전망하는 것이 세수결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타당함.

[2025년 4월 세수 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세목	'24년 실적	'25년 예산	4월까지 누계				4월 진도율		
			'24년	'25년	증감	(증감율)	'24년1]	최근5년2]	'25년
▪ 총 국 세	336.5	382.4	125.6	142.2	16.6	(13.2)	37.3	38.3	37.2
▪ 일 반 회 계	326.2	371.8	122.0	138.5	16.5	(13.5)	37.4	38.4	37.2
○ 내 국 세	298.3	338.1	114.3	129.8	15.5	(13.6)	38.3	39.4	38.4
- 소 득 세	117.4	126.8	35.3	38.8	3.5	(9.8)	30.1	31.3	30.6
- 법 인 세	62.5	88.3	22.8	35.8	13.0	(57.0)	36.5	42.0	40.6
- 상속증여세	15.3	14.5	6.0	6.5	0.5	(8.9)	39.2	40.4	45.0
- 부가가치세	82.2	87.6	40.3	39.7	△0.6	(△1.6)	49.0	48.5	45.2
- 개별소비세	8.7	9.7	3.2	3.1	△0.1	(△4.2)	36.9	36.6	31.7
- 증권거래세	4.8	3.8	1.9	1.1	△0.8	(△44.6)	40.0	36.5	27.4
- 인 지 세	0.8	0.9	0.3	0.3	△0.0	(△8.7)	32.9	34.1	28.8
- 과년도수입	6.5	6.5	4.5	4.7	0.2	(4.1)	69.1	69.7	72.1
○ 교통에너지환경세	11.4	15.1	3.6	4.1	0.5	(14.7)	31.3	33.8	27.0
○ 관 세	7.0	8.4	2.1	2.4	0.3	(16.0)	29.9	31.1	28.7
○ 교 육 세	5.4	6.0	1.9	1.9	0.1	(2.7)	35.3	35.7	32.3
○ 종합부동산세	4.2	4.1	0.1	0.2	0.0	(34.6)	3.3	3.4	4.5
▪ 특 별 회 계	10.4	10.6	3.6	3.7	0.1	(3.7)	34.7	35.5	35.1
○ 주 세	3.3	3.2	1.5	1.4	△0.0	(△3.2)	44.8	46.0	45.0
○ 농 특 세	7.0	7.4	2.1	2.3	0.2	(8.6)	30.0	30.1	30.8

자료: 기획재정부

향후 세입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최근 경제동향 또한 내수 회복 지연, 불확실한 통상여건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으로 평가²²⁾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²³⁾되고 있는 바, 이는 금년 귀속분 세수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악화된 세수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2) (기획재정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으로 평가(「2025년 6월 최근 경제동향」, 2025. 6. 13.)

(한국은행) 국내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여건도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경제상황 평가」, 2025. 4. 17.)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23) KDI, 한국은행: 0.8%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또한, 반도체 분야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2025년 2월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²⁴⁾ 유류세·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의 적용기간 연장²⁵⁾ 등 조치에 따른 세수효과 등 예산안 편성 이후 달라진 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세입경정은 계획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유지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²⁶⁾으로,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소비와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민생안정’으로 밝히고 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입경정은 과다 추계된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추경의 목적 중 하나인 경기진작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재원부족으로 사업예산의 불용 등 정부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사업별 지출계획을 임의로 축소 집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세출 예산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2023년과 2024년에 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가운데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 없이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 지방교부세 배정 유보, 불용 등 대체재원의 확보나 지출 규모의 조정으로 대응하였는데, 국회는 이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54조제1항²⁷⁾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대규모 세

24) 2025년 2월 국회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보완의 일환으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7개 조세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세법에 따른 2025년도 세수감소효과는 5,383억원으로 추계됨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내용」 (2025.3.4)).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2025. 6. 16.)

26) 기획재정부, 「2025년 6월 최근 경제동향」 (2025. 6. 13.)

수결손 발생 시 추경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를 채택한 바 있음.²⁸⁾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에 세입부족을 추가하는 방안, 세수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²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다만, 2021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수오차의 원인과 세수추계 업무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세수추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 최근 10년간 세수오차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본예산(A)	세입실적	세수오차(B)	오차율(B/A)
2015	221.1	217.9	△3.2	△1.4
2016	222.9	242.6	19.7	8.8
2017	242.3	265.4	23.1	9.5
2018	268.1	293.6	25.5	9.5
2019	294.8	293.5	△1.3	△0.4
2020	292.0	285.5	△6.5	△2.2
2021	282.7	344.1	61.3	21.7
2022	343.4	395.9	52.6	15.3
2023	400.5	344.1	△56.4	△14.1
2024	367.3	336.5	△30.8	△8.4

코로나19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3조원, 52.6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4조원, 30.8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큰 폭으로 발생한데 이어 올해 다시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국세수입 추계의 신뢰성과 추계업무의 객관성·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7)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9) 안도결의원안(3221), 윤종오의원안(5269), 윤준병의원안(6546), 차규근의원안(2310)

대규모 세입추계 오류가 반복될 경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경제의 안정과 성장,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과 세수추계 업무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세수추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3) 국세수입 경정규모의 적정성 검토

< 현 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감소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5개 세목을 총 11.2조원 감액경정하고, 당초 예산대비 초과수납이 예상되는 상속세를 0.9조원 증액경정하려는 것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세수입 세목별 경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A)	제2회 추경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1	법인세	882,544	835,671	△ 46,872	△ 5.3
2	부가가치세	876,388	833,292	△ 43,095	△ 4.9
3	상속세	84,637	94,015	9,378	11.1
4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	140,012	△ 11,036	△ 7.3
5	개별소비세	96,663	87,479	△ 9,184	△ 9.5
6	교육세	60,402	57,765	△ 2,637	△ 4.4
합 계		2,151,682	2,048,234	△ 103,448	△ 4.8

주 :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국세수입은 동일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검토의견 >

법인실적 증가세 둔화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인해 일부 세목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코스피·코스닥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32%였으나, 하반기 증가세가 86%로 둔화되어 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본예산 88.3조원 대비 4.7조원을 감액경정하여 83.6조원을 편성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4년 12월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위축³⁰⁾된 점을 반영

30) 2024년 민간소비 증가율(%): 1.8(정부, '24. 8.) → 1.1(실적)

하여 본예산 87.6조원 대비 4.3조원을 감액경정하여 83.3조원을 편성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유류세, 발전연료 및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30.8조원 대비 2.3조원을 감액경정하여 28.5조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임.

과거 세입 감액경정 사례를 살펴보면, 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하는 등 경제여건 악화를 사유로 예상되는 세입 결손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 세입 감액경정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음.

[2000년 이후 세입 감액경정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목적]

(단위: 조원)

구분	감액경정 규모 및 주요내용		경정 주요 목적
	경정액	주요 감액경정 세목	
2005년	△3.6	부가세(2.8), 관세(1.5), 교통·에너지·환경세(1.1) ※ 법인세(3.3) 증가	·실질성장률의 전망하락 (5.0%→3.8%, 정부) ·환율하락에 따른 관세와 수입분 부가가치세 세수 등 부진
2009년	△11.4	양도소득세(2), 법인세(5.7), 관세(1.6)	·국제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6.4%→0.5%) ·부동산 경기침체, 기업이익 악화 등
2013년	△6.0	법인세(2.1), 부가세(2.3)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4.0%→2.3%, 정부) ·가계부채의 누증 등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침체
2015년	△5.4	법인세(2.0), 부가세(3.4)	·낙관적인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세입 예측오차 ·경기침체
2020년	제1회 △0.8	법인세(0.1)	·경상성장률 전망 하락(3.0→1.1%, 정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3회 △11.5	법인세(5.8), 부가세(4.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2.6%→0.1%, 정부) ·2019년 법인실적 등 부진

자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및 심사 당시 반영하기 어려웠던 대내외 경제상황 변동을 감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2025년 5월까지의 누적 징수실적을 반영해 증감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한 세목 중심으로 감액 또는 증액경정안을 제출한 것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 2.3(정부, '24. 8.) → 1.1(한국은행, '25. 5.)

다만, 정부는 거시경제전망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주요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추계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세입예산안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출입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환율 등 다양한 경제지표가 반영되어 편성됨. 합리적이고 적절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과세연도의 경제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³¹⁾.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2025년 6월까지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연중 거시경제변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최신의 주요 거시경제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재정법」³²⁾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³³⁾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추계분석보고서에는 세입경정의 주요 원인 및 세목별 경정내역만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KDI 등 주요 기관의 2025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수정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의 거시경제변수와 비교할 때 대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었음.

31)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민간소비에 대한 민간전망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에너지 사용 전망 등 일부 경제변수는 공개하였다는 입장임.

32)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3)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제]

구 분	'24년 전망 ('24. 8.)	'24년 실적	'25년 전망 ('24. 8.)	'25년 수정 전망
경상성장률(%)	5.5	6.2	4.5	3.5 ³⁴⁾
실질성장률(%)	2.6	2.0	2.2	0.8 ³⁵⁾ ~ 1.5 ³⁶⁾
GDP def.	2.9	4.1	2.3	2.0 ³⁷⁾
민간소비증가율(%)	1.8	1.1	2.3	1.1 ³⁸⁾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3	2.1	1.7 ³⁹⁾ ~ 1.9 ⁴⁰⁾
취업자증감(만명)	23	16	17	9 ⁴¹⁾ ~ 12 ⁴²⁾
명목임금 상승률(%)	3.1	2.9	2.9	3.2 ⁴³⁾
수출 증가율(통관, %)	9.0	8.1	6.0	△0.4 ⁴⁴⁾ ~ △0.1 ⁴⁵⁾
수입 증가율(통관, %)	2.0	2.7	4.5	0.0 ⁴⁶⁾ ~ 0.2 ⁴⁷⁾
환율(원/\$)	1,350	1,364	1,380	1,381.4 ⁴⁸⁾

주: '24년 전망, 실적 및 '25년 전망은 정부 발표자료

한편,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법인세, 상속세 등 일부 세목의 경우 세수 추계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추계모형을 활용하여 세입경정의 적정성과 추계모형의 정확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을 보완한 바 있음. 당초 모형은 회귀분석으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을 도출하고,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IMF의

34) 국회 예산정책처, 「2025 NABO」 경제전망, 2025. 3.

35)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36) 국회 예산정책처, 「2025 NABO」 경제전망, 2025. 3.

37) 국회 예산정책처, 「2025 NABO 경제전망」, 2025. 3.

38)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39)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40) 국회 예산정책처, 「2025 NABO 경제전망」, 2025. 3.,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41)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42)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43) 국회 예산정책처, 「2025 NABO 경제전망」, 2025. 3.

44)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45)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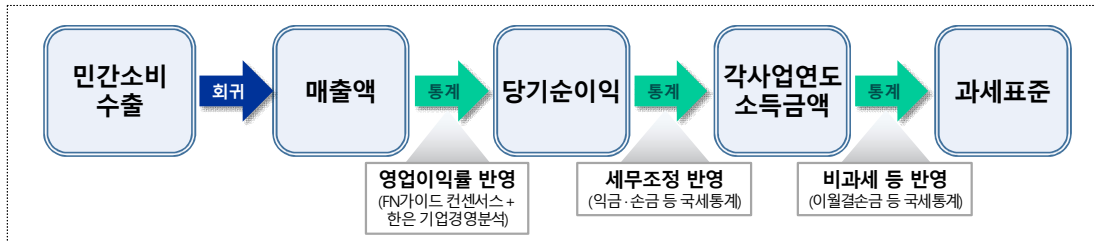
46)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47)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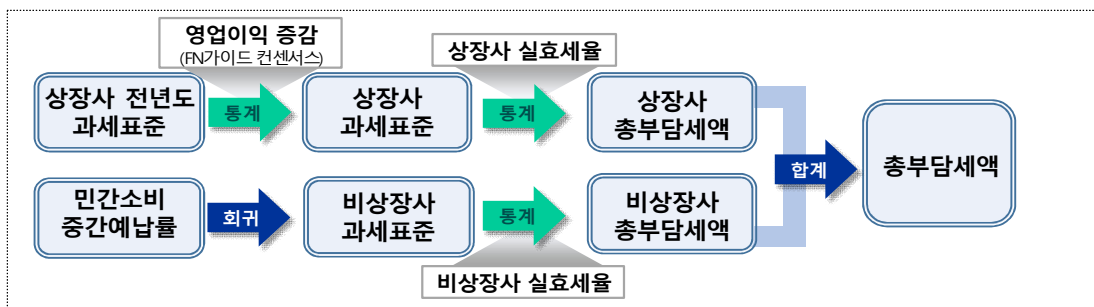
48) 기획재정부, 「2025년 6월 주요경제지표」. 61쪽. 2025년 5월 기말 환율

제언을 반영하여 상장사·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법인세 신고분을 추계하는 것으로 모형을 개선함.

[당초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4년 예산안)]



[개선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5년 예산안)]



그러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법인세 신고분 상세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지 않고 자납분, 중간예납분 및 고지분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분으로 추계함.

상속세의 경우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추계모형을 통해 세수를 추계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추계모형이 아닌 평균진도율을 통한 방법으로 세수를 추계함.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상속세와 같은 일부 세목의 경우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와 달리 2025년 5월 말 기준까지의 최신 세입실적이나 개별 납세자료, 진도율 등을 바탕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추계모형을 통한 추계보다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그동안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모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신 세입실적, 개별 납세자료, 진도율 등의 수치를 활용한 추계에 더해 추계모형을 통한 세수예상액까지 활용함으로써 세입경정의 적정성과 추계모형의 정확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⁹⁾.

경정한 6개 세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①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신고분 59조 6,605억원 및 원천분 23조 9,066억원을 합한 83조 5,671억원으로 추계됨⁵⁰⁾. 법인세 신고분은 자납분 32조 9,588억원, 중간예납분 23조 5,197억원 및 고지분 3조 1,820억원으로 추계됨.

[제2회 추경예산안 법인세 신고분 산출근거]

596,605(억원)	=	329,588	+	235,197	+	31,820
		(자납분)		(중간예납분)		(고지분)

자료: 기획재정부

법인세 신고·납부가 12월 결산법인⁵¹⁾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3월 말까지, 분납세액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일반법인) 및 2개월 이내(중소기업) 이뤄진다는 점에서 2025년 5월 말 기준 세입실적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 신고분, 특히 자납분은 어느 정도 예측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보임.

8월에 납부되는 중간예납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산출근거를 통해 추계됨.

[제2회 추경예산안 법인세 신고분 중 중간예납분 산출근거]

'25년 중간예납	=	(	'24년 귀속 총부담세액	×	중간 예납률*	+	가결산 의무화 세수효과	)	×	최근 납부비율
					(33.7%)		(14,000억원)			

주: 최근 3년 평균 중간예납률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4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당시에도 국회는 세목별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세수전망을 재추계하여 세수추계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pp. 35-36).

50) 2025년 4월 누계치 35.8조원을 5년 평균 진도비 42.0%로 나눈 값은 85.2조원임.

51) 2022년 법인세 신고기준 12월 결산법인은 92.5만개로 전체 신고법인의 94.2%(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p. 222.)

2024년 개정세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경우,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택일하여 중간예납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산출하도록 의무화됨. 이는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임.

다만, 정부가 2024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당시 가결산 의무화로 인한 세수효과를 1조 4,000억으로 예상하였는데, 개정 효과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세수효과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24년 법인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2024년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진단⁵²⁾함에 따라 법인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4.3조원 감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세입예산안 제출 당시 법인실적 호조를 전제로 예상했던 1조 4,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 역시 저조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가결산 의무화 제도로 인한 세수증가는 추후 신고분을 사전에 정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증가로 2026년에는 동일한 금액의 세수감소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세수 증감효과는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 밖에도, 2024년 개정세법 이후 2025년 2월 「법인세법」은 수정가결,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안가결 되었는데, 2월 법인세제 개편에 포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의 세수감소효과가 2025년 4,127억원으로 추계⁵³⁾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의 경우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의 증가세 둔화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예산을 4.8조원(△5.4%)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83조 3,292억원으로 추계됨⁵⁴⁾. 부가가치세는 한 분기의 확정·예정신고가 다음 분기의 세수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음.

52) 2024년 코스피+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 (상반기) 232% → (하반기) 86%

53)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 3.

54) 2025년 4월 누계치 39.7조원을 5년 평균 진도비 48.5%로 나눈 값은 81.9조원임.

[제2회 추경예산안 부가가치세 산출근거]

$$\begin{array}{l} \text{'25년 부가가치세 전망} \\ \text{부가가치세 실적} \\ \text{(168,388억원)} \end{array} = \begin{array}{l} \text{'25.1~2월 부가가치세 실적} \\ \text{부가가치세 실적} \\ \text{(168,388억원)} \end{array} + \begin{array}{l} \text{'25.3~'26.2월 부가가치세 전망} \\ \text{부가가치세 실적} \\ \text{(168,388억원)} \end{array} - \begin{array}{l} \text{'26.1~2월 부가가치세 전망} \\ \text{부가가치세 실적} \\ \text{(168,388억원)} \end{array}$$

$$\ln(\text{'25.3월~'26.2월 실적}) = C + \beta \times \ln(\text{'25년 민간소비})$$

(Y절편) (회귀계수)

$$\begin{array}{l} \text{'25.3월~'26.2월 부가가치세 전망} \\ \text{부가가치세 실적} \\ \text{(168,388억원)} \end{array} = \text{EXP}(\ln(\text{'25.3월~'26.2월 실적})) \times \begin{array}{l} (1 - 25.3\%) \\ \text{(지방소비세분 차감)} \end{array}$$

$$\begin{array}{l} \text{'26년 1~2월 부가가치세 전망} \\ \text{부가가치세 실적} \\ \text{(168,388억원)} \end{array} = \begin{array}{l} \text{'25.1~2월 부가가치세 실적} \\ \text{부가가치세 실적} \\ \text{(168,388억원)}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회귀모형 상} \\ \text{'25년 대비} \\ \text{부가가치세 증가율} \end{array}$$

자료: 기획재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산출근거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의 부가가치세 추계모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전망모형의 주요 설명변수가 대부분 하향 전망된다는 점은 이번 감액경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세수의 추가적인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의 부가가치세 전망모형의 주요 설명변수는 민간소비 및 소비자물가이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더해 경상GDP, 통관수출입, 환율 등도 함께 고려하는데⁵⁵⁾ 앞선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제’의 수정전망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설명변수는 2025년 예산안 당시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진작(15.2조원)⁵⁶⁾과 ‘민생안정(5조원)⁵⁷⁾을 목표로 총 30.5조원 규모(10.3조원 세입감액경정 포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효과가 높을 경우 올해의 민간소비가 활성화되어 부가가치세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이번 추경 재원을 통해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13.2조원 규모의

55)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2023. 8., pp. 107-108.

56)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신산업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57)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될 예정인데 사용기한이 한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진작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여러 지원 내용도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언론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⁵⁸⁾.

또한, 한국은행과 KDI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유가가 하방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전망을 하였는데⁵⁹⁾,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⁶⁰⁾와 맞물려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음⁶¹⁾.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87.6조원)을 2.9조원(△3.3%) 하회하는 84.7조원으로 전망한바, 정부 전망치에 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1.4조원(1.6%) 높음. 올해 부가가치세수는 하반기부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개선,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효과 등으로 올해 5~12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③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 9조 4,015억원으로 추계됨⁶²⁾.

[제2회 추경예산안 상속세 산출근거]

'25년 상속세					우발세수 추정분	
=		5월 누계 실적	÷		평균 진도율*	+
		(우발세수 추정분 제외)			(52.7%)	(4,500억원)

주) 대기업 총수 상속세 연부연납(연간 2조원) 시작 이후('21년)부터 최근까지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상속세는 토지분, 건물분, 유가증권분, 금융자산분, 기타분

58) 연간으로는 0.2%p 성장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59)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60) 2.75% → 2.50%

61) 한국은행,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국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2.

62) 2025년 5월 누계치 5.2조원을 4년 평균(대기업 총수의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인한 진도비 왜곡 조정) 진도비 52.7%로 나눈 값은 9.87조원임.

각각에 대한 추계모형과 상속세 세법개정(정부 제출안) 사항을 감안하여 7조 6,377억원이 추계되었으나 상속세제 미개편으로 인해 본예산은 8조 4,637억원으로 수정됨.⁶³⁾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계모형에 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근거와 같은 평균 진도율법의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동 방법을 근거로 상속세를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④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14조 12억원으로 추계됨⁶⁴⁾.

[제2회 추경예산안 교통·에너지·환경세 산출근거]

최종 납부세액 (140,012억원)	=	휘발유분 납부세액 (71,706억원)	+	경유분 납부세액 (68,305억원)
주1] '25년 에너지 수요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25.2월) 반영: 휘발유 : 15,660천kl, 경유 : 22,655천kl				
주2]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적용 반영: (1~4월) △15/△23 → (5~8월) △10/△15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동일한 추계모형에서 당시의 최신 전망치⁶⁵⁾를 대입하여 추계하였는바, 이번 세입경정 역시 동일한 추계모형에서 최신 전망치를 대입하고, 휘발유/경유 탄력세율을 8월 말까지 연장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경우 8조 7,479억원으로 추계됨⁶⁶⁾.

[제2회 추경예산안 개별소비세 산출근거]

최종 납부세액 (87,479억원)	=	'25년 개별소비세 본예산 (96,663억원)	-	자동차분·유류분 변동분 (9,184억원)
주1] 자동차 개소세 연중 △30% 적용 반영				
주2] 발전연료 탄력세율 연중 △15% 적용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63)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완화,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금액 상향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당 세법 개정효과를 반영하여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동 법률 개정안이 2024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도 관련 세법개정효과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됨.

64) 2025년 4월 누계치 4.1조원을 5년 평균 진도비 33.8%로 나눈 값은 12.1조원임.

65) 주1] '25년 유종별 소비전망 반영: 휘발유: 14,520천kl, 경유: 24,674천kl

주2]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단계 환원 가능성 전제

66) 2025년 4월 누계치 3.1조원을 5년 평균 진도비 36.6%로 나눈 값은 8.47조원임.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개별소비세는 동일한 추계모형에서 당시의 최신 전망치⁶⁷⁾를 대입하여 추계하였는바, 이번 세입경정 역시 동일한 추계모형에서 최신 전망치를 대입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연중 30% 인하 및 발전연료 탄력세율을 연중 15% 인하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한국은행과 KDI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유가가 하방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전망을 하였는데⁶⁸⁾,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경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추가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024년 개정세법 이후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가결 되었는데, 2월 세제개편에 포함된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의 세수감소효과가 2025년 736억원으로 추계⁶⁹⁾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음.

⑥ 교육세

교육세의 경우 5조 7,765억원으로 추계됨⁷⁰⁾.

[제2회 추경예산안 교육세 산출근거]

25년 교육세	=	개소세분 (4,449억원)	+	주세분 (7,342억원)	+	교통세분 (21,067억원)	+	기타분 (24,907억원)
---------	---	-------------------	---	------------------	---	--------------------	---	-------------------

- 주1] 개소세분: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의 30%,
부탄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의 15% 반영
주2] 주세분: '24년 주세분 관련 세수효과 △244억원 반영
주3] 교통세분: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 감소의 15% 반영
주4] 기타분: 4월 누계 실적 및 최근 추세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교육세는 동일한 추계모형에서 당시의 최신 전망치⁷¹⁾를 대입하여 추계하였는바, 이번 세입경정 역시 동일한 추계모형에서 최신 전망치를 대입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연중 30% 인하 및 부탄 탄력세율을 연중

67) 발전용 유연탄: 57.5백만톤 / 발전용 LNG: 24.0백만톤 / 부탄: 3,333천톤

68)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69)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 3.

70) 2025년 4월 누계치 1.9조원을 5년 평균 진도비 35.7%로 나눈 값은 5.32조원임.

	본세(억원)	실효세율(%)	
개소세분	36,575	16%	
주세분	32,093	24%	
71) 교통세분	151,048	15%	(자료: 기획재정부)

15% 인하한 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2024년 개정세법 이후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가결 되었는데, 2월 세제개편에 포함된 교육세 세수감소효과가 2025년 221억원으로 추계⁷²⁾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음.

경정한 6개 세목 이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경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경정한 6개의 세목에 대해서는 세목별 상세 산출근거를 공개했으나,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이외의 세목에 대해서는 세목별 상세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해당 세목 미경정 사유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세목은 본예산 대비 증감 가능성이 불확실한 세목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출 가능한 하나의 추계결과와 산출근거가 없어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해당 세목에 대해서도 세목별 산출근거를 통해 추계한 시나리오 등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세입경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소득세, 법인세 등 회귀식을 활용해 세입을 추계하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세입경정이 이뤄졌는데, 제한적인 세목의 세입경정은 경정 이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한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⁷³⁾. 이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가지 세목을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세입경정을 실시해 최근 경제여건이 추경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됨. 이하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관세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봄.

① 소득세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경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최근 월별실적이 등락하고 있어 금년 전망이 불확실하고,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신고, 하반기 자산시장 추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세 등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

72)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 3.

7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장을 개진함.

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상방압력 가능성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⁷⁴⁾.

첫째, 5월 국세징수 실적을 감안할 때 소득세는 본예산 대비 상방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도 5월 기준 진도비를 감안한 소득세 전망치를 129.9조원으로 밝혔는바, 이는 본예산 대비 3.1조원 큰 값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4월 기준 진도비를 감안한 소득세 전망치는 124.0조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2.8조원 적은 규모인바, 단순히 5월 기준 진도비를 감안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2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소득세의 최신 세입실적이 반영된 5월 기준 진도비는 4월 기준 진도비와 달리 소득세의 설명력을 높이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음⁷⁵⁾.

둘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4월 누계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5조원 증가⁷⁶⁾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도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이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올해 1~2월 명목임금 상승률이 5.1%로 나타났다고 진단한 바 있음⁷⁷⁾.

셋째,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의 자산흐름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의 증가가 소득세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⁷⁸⁾과 거래량의 확대⁷⁹⁾는 양도소득세의 상방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2024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2,603억 달러로, 2023년 매도금액 1,450억 달러 대비 약 80% 증가⁸⁰⁾하였는바, 2024년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확정신

74)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최신의 추계모형 변수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세수추계는 제한적임.

75)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별도로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함.

76) 상용근로자수(만명): ('23.12~'24.3) 6,510 → ('24.12~'25.3) 6,598 <+88만명, +1.3%>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6월호)』)

77)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p. 14.

78) 2025년 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월평균): 1.5%(1월), 1.6%(2월), 1.8%(3월)

2025년 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월평균, 강남): 6.0%(1월), 6.9%(2월), 9.1%(3월)(자료: 한국부동산원)

79) 4월까지 누적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22.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 수도권의 경우 28.8% 증가.(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6월 최근경제동향」, KB, 「KB 주택시장 리뷰 2025년 5월호」)

80) 키움증권,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현황 점검」, 『산업브리프』, 2025. 1. 3.

고납부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한편, 2024년 개정세법 이후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안가결되었는데, 2월 세제개편에 포함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의 세수감소효과가 2025년 886억원으로 추계⁸¹⁾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의 경우 본예산을 1.3조원(1.0%) 상회하는 128.1조원으로 전망함. 세부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본예산을 각각 2.8조원, 1.0조원 상회하지만 종합소득세가 본예산을 1.9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4월까지 소득세가 전년동월 대비 3.5조원(9.8%) 증가하여 2024년 소득세 실적(117.4조원) 대비 본예산 증가율(8.0%)를 초과하는 수납실적을 기록한 것과 고용지표의 개선세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연중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결과에 따라 소득세는 본예산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봄.

② 관세

기획재정부는 관세 경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중동사태, 미국 관세정책 방향 등에 따라 환율 및 수입액 등 전망이 불확실하여 현시점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다만,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하방압력 가능성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년도 예산안 편성당시 관세 추계모형에 비추어볼 때 관세의 하방압력이 다른 세목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예산안 관세 산출근거]

납부세액	=	수입액 전망	×	환율 전망	×	실효세율	+	세법개정
		(6,849억불)		(1,380원/\$)		(0.82%)		(+6,508억원)

주) 실효세율: 최근 추세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81)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 3.

관세의 추계모형에서 알 수 있듯 관세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는 수입액 전망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수입액 전망을 6,849억불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한국은행 경제전망⁸²⁾에 따르면 예산안 대비 10.1% 급감한 6,157억불,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예산안 대비 16.1% 급감한 5,757억불로 전망됨.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제’ 표에서도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2025년 수입 증가율이 4.5%로 전망되었으나, 최근에는 0.0%까지 전망⁸³⁾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입액 전망의 하방압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2024년 8월)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2025년 1월)하기 이전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환율의 경우 연초에는 달러당 1,450원을 오르내리는 흐름을 보였으나 5월부터는 달러당 1,385원을 오르내리면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실효세율은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0.82%에서 큰 영향 없이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할 때 긴급할당관세⁸⁴⁾로 인한 추가 세수감소도 있을 것으로 보임. 「관세법」 제71조제1항⁸⁵⁾은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별표 개정을 통해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한 시점(2024년 8월) 이후 긴급할당관세 운용으로 인한 관세 감소분이 관세 추계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세 감소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긴급할당관세 환원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를 6,508억원으로

82) 한국은행,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 p. 24.

83) KDI,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14.

84) 정기할당관세 : 매년 사전에 물4k 안정 또는 산업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
긴급할당관세 : 연도 중에 발생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또는 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

85)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상했으나, 예산안 국회 제출시점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긴급할당관세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긴급할당관세를 실시할 예정인바⁸⁶⁾, 추가적인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실제 최근 3년간 할당관세(정기할당관세+긴급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 평균은 1조 4,916억원⁸⁷⁾이며 2024년 기준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1조 4,301억원) 중 긴급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⁸⁸⁾ 비중은 45.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둘째, 4월 국세징수 실적을 감안할 때 관세는 본예산 대비 하방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4월 관세 누계치를 살펴보면, 4월 누계치 2.4조원을 5년 평균 진도비 31.3%로 나눈 값은 7.7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0.7조원 작은 값을 보이고 있음.

셋째, 2024년 개정세법 이후 2025년 2월 「관세법」이 대안가결 되었는데, 2월 세제개편에 포함된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을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가 2025년 167억원으로 추계⁸⁹⁾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관세의 경우 본예산 편성당시 전제한 통관수입 증가율 전망하락 등으로 본예산을 0.7조원(△8.8%)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정부는 최근 5년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였음에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정부는 대규모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을 기록함.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약 61조원, 52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기록했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약 56조원,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대규모 세수오차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22년도 이후 세수오차 개선을

8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2025. 6. 16.

87) 2022년 1조 9,694억원, 2023년 1조 753억원, 2024년 1조 4,301억원

88) 6,508억원

89)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 3.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매년 발표함. 특히 2024년 정부는 보도자료⁹⁰⁾를 통해 세수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① 추계의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국제통화기금의 기술자문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으며, ③ 세수추계 전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조세연구원, KDI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하고, ④ 주요 과세정보와 추계모형을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며, ⑤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힘.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국세청·관세청·조세연구원 등 일부 기관만 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계분석보고서 포함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며, 추계모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도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⁹¹⁾.

따라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세수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감액경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⁹²⁾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감액경정하지 않았는데⁹³⁾, 재정건전성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부세를 추후 조절할 필요가 있겠음.

9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 9. 26.

91)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전인 5월 27일 세수추계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세입여건 및 세입전망에 대해 점검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추가적으로 별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입장임.

92)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93) 반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72조 2,794억원 대비 약 2조원 감액된 70조 2,812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4) 국공채발행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 현 황 >

국공채발행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 발행 수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임. 동 수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2조 7,394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함에 따라 229조 8,04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공채발행수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수입명	2024년		2025년			증감	
	계획	수납	당초 계획액	제1회 추경 (A)	변경안 (B)	(B-A)	(B-A)/A
국공채발행수입	158,422,061	161,234,028	197,552,551	207,065,023	229,804,470	22,739,447	11.0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물량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므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경정 △10.3조원을 고려하여 총 30.5조원 규모로, 이 중 약 74.4%에 해당하는 약 22.7조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이는 본예산 기준 발행 예정이었던 순증용 국고채 80조원의 약 28.4%에 해당하는 국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계획 변화]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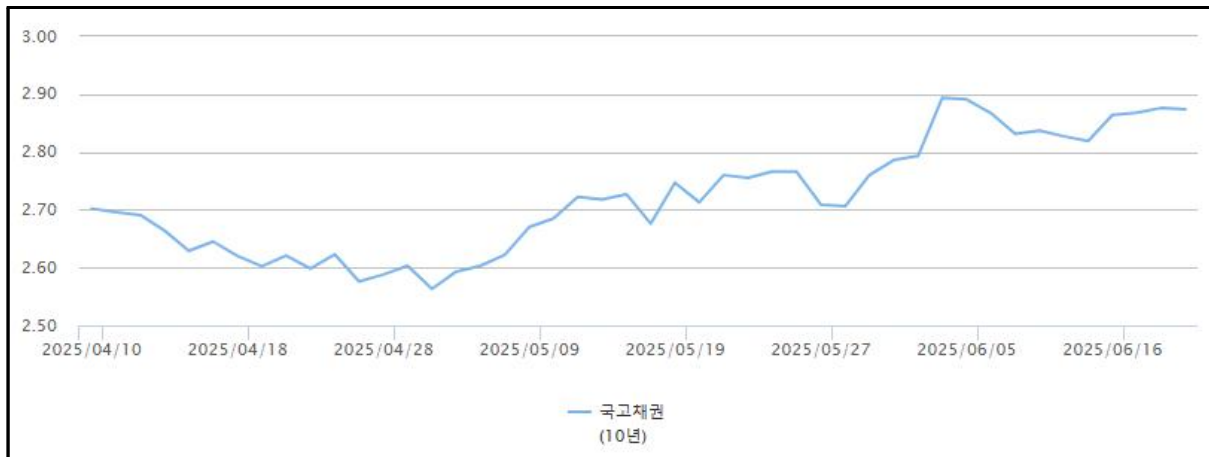
구분	2025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197.6	207.1 (+9.5)	229.8 (+22.7)
- 순증용	80.0	89.5 (+9.5)	112.3 (+22.7)
- 차환용	117.5	117.5	117.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상당한 물량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일시적인 국고채 수급 불균형 가능성 등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① 우선, 상당한 물량의 국고채가 시장에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공급량 증대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시장금리 상승(국채가격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 규모가 이번 추경안 규모보다 적은 약 8.1조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일인 5월 1일을 전후로 국고채 시장금리가 상승한 바 있음. 또한, 2020년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한국은행 역시 국고채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서의 채권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2025년 4월~6월 국고채 시장금리 현황]



주: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자료: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특히 2025년 5월의 국고채 응찰률은 257.2%로 전월(273.8%) 대비 하락하였으며, 2025년의 국고채 평균 응찰률이 2024년에 비해 낮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국고채 응찰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4~2025년도 월별 국고채 응찰률 현황]

(단위: %)

구분	2024	2025.1.	2025.2.	2025.3.	2025.4.	2025.5.
평균 응찰률	321.1	285.6	305.1	252.0	273.8	257.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장단기 채권 간 금리차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단기 금리차 확대 추이를 면밀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장단기 채권 간 대체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단기 금리 조정을 통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장기 금리시장에 전달되지 못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최근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차) 현황을 보면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5월의 경우 장단기 금리차는 43.9bp로 전월(29.6bp)에 비해 장단기 금리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24~2025년도 월별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 현황]

(단위: bp, 월말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8.1	9.0	9.1	12.7	12.6	8.4	6.0	13.5	18.1	16.4	14.4	25.9
2025년	28.6	14.0	20.2	29.6	43.9	-	-	-	-	-	-	-

주: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③ 또한, 대규모 국고채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채와의 금리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분에 대하여 국고채 시장 상황이나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여 국고채 발행에 대한 시기나 수급 조절을 적절히 함으로써 국고채 추가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지방채 인수(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 편성 필요

< 현 황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00억 대비 1조원(476.2%) 증액된 1조 2,1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지방채 인수(융자)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계획	집행	당초 계획액	제1회 추경 (A)	변경안 (B)	(B-A)	(B-A)/A
지방채 인수(융자)	2,600,000	2,596,204	10,000	210,000	1,210,000	1,000,000	476.2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안에도 1조원이라는 대규모 증액분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으며 6월 기준 집행 실적은 450억원에 불과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의 2025년 당초 계획액은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북 산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채 인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액의 20배에 해당하는 2,000억원이 증액된 바 있음. 동 사업은 이에 더하여 이번 제2회 추경안에 1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계획안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에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수요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이에 기초하여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그 수요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방채 인수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단위: 억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8,574	6,175	1,000	125	1,551	2,155	162	-	51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45	1,758	768	3,269	3,418	397	500	837	2,196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이번 추경안 증액분에 대하여 2024년 집행액(약 2.6조원)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추경안 편성 근거로 삼은 지자체 수요조사는 별도의 공문 없이 행정안전부가 대략적으로 조사한 수요조사이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수요의 구체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에 기반하여 추경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편성된 1조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지자체 수요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 지방채 인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증액 규모를 산출하지 않고 임의로 1조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하여 계획안이 면밀하지 못하게 산출되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채 인수(용자)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에서 당초 계획액 대비 2,000억원 증액한 2,100억원으로 계획액이 수정되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집행액은 450억원(경북 청송군 150억원, 경북 영덕군 300억원)으로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임.

[2025년도 월별 지방채 인수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초 계획	제1회 추경	집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예산	100	2,100	-	-	-	-	-	450

자료: 기획재정부

물론 제1회 추경에 따른 계획액 변경이 5월 초에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기간이 1개월 가량이었으므로 추가 집행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임. 그러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 당시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의결 직후인 5월에 즉시 2,000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전부 인수하겠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까지 집행액이 450억원에 불과한 것은 인수 계획에 비해 실제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이러한 상황에서 제2회 추경안에는 제1회 추경안 증액분의 5배에 해당하는 1조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제1회 추경안 당시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 실적의 차이를 고려할 때 금번 추경안의 증액분 1조원 역시 실제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동 사업은 제2회 추경안 증액분을 1조원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지자체 수요에 대한 타당성 등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변경계획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또한,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된 2,000억원의 집행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고 계획액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6) 국고채 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과다편성된 계획안 감액 필요

< 현 황 >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1회 추경 계획액 30조 1,205억 8,500만원 대비 2,728억 7,400만원(0.9%) 증액된 30조 3,93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계획	집행	당초 계획액	제1회 추경 (A)	변경안 (B)	(B-A)	(B-A)/A
국고채 이자상환	28,259,942	27,724,637	29,977,898	30,120,585	30,393,459	272,874	0.9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국고채의 균등 발행 계획과 달리 조기 발행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이자지급기간이 과다계상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에도 금리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안은 추경안 편성으로 인하여 약 22.7조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함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가 국고채 발행분에 3%의 편성금리와 4.8개월분의 이자지급기간을 적용하여 계획안을 산출하였음.

[국고채 이자상환 제2회 추경안 편성 산출근거]

$$22,739,447\text{백만원(추가 국고채 발행분)} \times 3\%(\text{편성금리}) \times 0.4(4.8\text{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이자지급기간을 4.8개월분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이자지급기간 산출근거]

$$2/3^{1)} \times (0.6^{2)} \times 0.5^{3)} + 0.4^{4)} \times 0.5^{3)} + 1/3^{5)} \times (0.6^{2)} \times 0^{6)} + 0.4 \times 0.5^{3)}$$

- 1) 추가 국고채발행액 중 7,8월에 발행하는 국고채발행량의 비중
- 2) '25년 9월에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종목의 비중(2, 5, 20, 30, 50년물)
- 3) 1회 이자 지급시 6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해야함에 따라 0.5로 기술
- 4) '25년 12월에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종목의 비중(2, 5, 20, 30, 50년물)
- 5) 추가 국고채발행액 중 9월이후 발행하는 국고채발행량의 비중
- 6) '26.3월로 이자지급시기가 이월됨에 따라 금년도 이자지급액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이자지급기간은 국고채 균등 발행 계획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산출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을 7·8월 2개월에 걸쳐 모두 발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자지급기간을 4.8개월로 산출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국고채를 월별로 균등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국고채 추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는 추가되는 국고채 물량을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발행하기보다는 월별로 균등하게 발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제1회 추경안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심사 당시 제1회 추경에서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 전부를 5월에 일괄하여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기간을 8개월로 산정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제1회 추경이 확정된 직후인 5월 7일에 보도자료⁹⁴⁾를 통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 역시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동 사업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사 당시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산출근거 및 설명과 실제 발행 계획 간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도 역시 동 사업의 이자지급기간 산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고채 균등발행 원칙과 달리 국고채의 상당 부분을 2개월 내에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하여 이자지급기간을 과다하게 산출한 문제가 있음.

특히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 당시 이자지급기간을 과다계상한 문제가 있어 계획액이 350억원 감액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안에 또다시 국고채의 균등 발행 원칙을 위배하여 이자지급기간을 과다계상한 바 이는 국회에서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동 사업에 대하여 지적인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안 편성 관행으로 보임.

참고로, 추가되는 국고채 발행액을 7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자지급기간을 산출하는 경우 이자지급기간은 0.3(3.6개월)⁹⁵⁾이 산출되며, 이를 기준으로 동 사업의 계획안을 계산할 경우 국고채 추가발행에 따라 필요한 이자상환액은 2,046억 5,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안은 이에 비해 약 682억 1,9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⁹⁶⁾.

9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 2025.5.7.

95) $\frac{1}{3} \times (0.6 \times 0.5 + 0.4 \times 0.5) + \frac{2}{3} \times (0.6 \times 0 + 0.4 \times 0.5)$

96)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도 3.6개월의 이자지급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677억 7,2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자지급기간 변경에 따른 동 사업 계획안 변경]

(단위: 백만원)

구분	이자지급기간 4.8개월 (제2회 추경안)(a)	이자지급기간 3.6개월 가정 시(b)	차이(b-a)
증액안	272,874	204,655	△68,21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은 당초 계획액 편성 당시 조달금리를 3.4%로 높게 산정하였으나, 실제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조달금리는 2.62%에 불과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당초 계획안 심사 시 국회에서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수준을 반영하여 역산할 경우 당초 계획액 기준 산정된 조달금리는 3.0% 수준임. 그러나 이러한 3.0% 산정금리 역시 실제 5월까지의 조달금리 2.62%에 비해 높은 수준임.

[2025년 국고채 월별 신규발행 실적 및 조달금리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a)	당초 계획안 (b)	차이 (b-a)
국고채 발행금액(A)	183,799	213,045	208,670	210,220	191,340	1,007,054		
평균 조달금리(B)	2.72	2.69	2.65	2.56	2.47	2.62	3.00	0.38
이자소요액 (C=A×B×6개월)	2,500	2,865	2,765	2,691	2,363	13,184	15,106	1,92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계획액이 과다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4,900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53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국고채 이자상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1	20,210,096	18,887,773	-	18,887,773	18,225,615	-	662,158
2022	20,707,047	20,707,047	-	20,707,047	20,120,245	-	586,802
2023	24,811,837	24,811,837	-	24,811,837	24,030,807	-	781,030
2024	28,259,942	27,769,942	-	27,769,942	27,724,637	-	45,30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동 사업은 제1회 추경안에 이어 제2회 추경안에서도 실제 국고채 발행 계획에 비해 이자지급기간을 과다하게 산출한 문제가 있으며, 당초 계획 역시 실제에 비해 조달금리가 과다계상되었고,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등 연례적으로 계획액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균등발행 원칙을 고려하여 이자지급기간을 재산출하고,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계획안을 과다산출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7)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복권기금):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추가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현 황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시설을 조성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25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존에 예정된 ‘인천’ 지역 외에 추가로 ‘의정부, 창원’에도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비는 38억 5,5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2025년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명)	2024년		2025년			증감	
	계획	집행	당초 계획액	제1회 추경 (A)	변경안 (B)	(B-A)	(B-A)/A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6341-312)	-	-	1,285	1,285	3,855	2,570	200.0
- 민간자본보조(320-07)	-	-	1,285	1,285	3,855	2,570	200.0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동 추경을 통해 추가되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의정부·창원)의 구축을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⁹⁷⁾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⁹⁸⁾에 따라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에 기금을 배분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를 구축하여 다중채무자⁹⁹⁾, 불법 사금융피해자¹⁰⁰⁾, 소상공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 회생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무료법률구조,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교육, 개인워크아웃,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유도, 범죄예방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임.

동 사업은 「법률구조법」¹⁰¹⁾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이 주체가

9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99)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

100)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0%)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피해자

101)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되어 실시하는 법무부의 「법률구조 사업(1131-300)」과 관련하여 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¹⁰²⁾에 따라 공익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4년 동안 총 152억 3,600만원이 지원되어 전국에 총 7개의 센터를 구축한 바 있음.

[2009년~2014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지역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7개소
복권기금지원액	3,348	2,800	2,800	1,888	1,800	2,600	15,23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울산센터는 임차

2015년부터 2024년 동안은 신규 센터 구축이 없었으며, 2025년의 경우 관할 인구수 및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에 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하여 복권 기금운용계획에 12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현재 인천 센터를 구축하고 있음.¹⁰³⁾

구분	본계획	변경안
금액	12억 8,500만원	38억 5,500만원 (25억 7,000만원 증)
산출 내역	① <u>인천</u>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12억 8,500만원	① <u>인천</u>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12억 8,500만원
	-	② <u>의정부</u>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12억 8,500만원
	-	③ <u>창원</u>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12억 8,500만원
상세 내역	○ 각 센터별 12억 8,500만원 상세내역 - 사무실 취득비(매매대금, 관리비, 등기비, 중개수수료) 10억 6,800만원 - 사무실 인테리어비(칸막이, 전기, 간판, 방송, 냉온풍기 설치 공사) 1억 7,600만원 - 자산취득비(책상, 컴퓨터, 복합기, 보안시스템 등 구입) 4,1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1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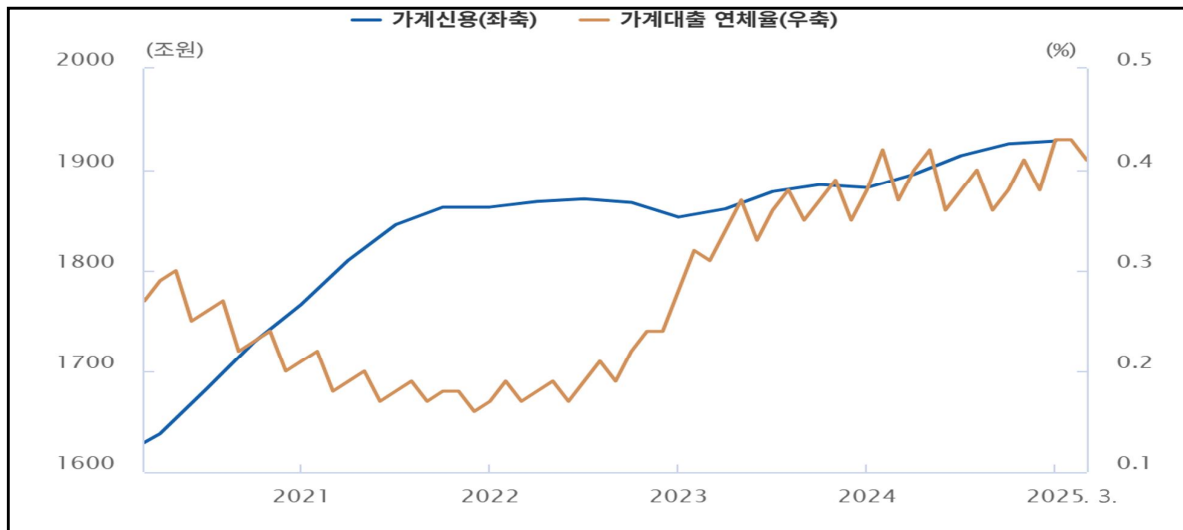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3) 참고로, 법무부의 경우 법률구조 세부사업(1131-300)의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의 2025년도 예산에 법률구조 활동비 257억원, 개인회생·파산신청 관련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지원 및 청·관사취득 및 관리 72억원 등 총 657억원을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개인회생·파산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센터별로 각 12억 8,500만원씩 총 25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2025년 중 인천 외에 추가로 ‘의정부, 창원’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 전체의 부채액 및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다중채무자 연체, 개인회생·파산 건수,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복권기금의 지원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가계신용(부채액) 및 가계대출 연체율]



※ 가계대출 연체율 :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전세사기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분		'22년 9월~	'23년	'24년	합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등결정	-	10,256	15,322	25,578
대한법률구조 공단	법률상담	707	3,807	4,932	9,446
	법률구조	293	814	1,355	2,462

[법원 및 공단의 연도별 개인회생·파산 건수]

(단위 : 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법원	130,113	131,429	162,256	169,602	148,350
공단*	19,533	19,461	23,814	23,480	21,572

* 공단 사건수 :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 부수사건 포함 건수, 지부+출장소+지소 실적 합산

[불법사금융 피해 금융감독원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1~ 10월
	(1~10월)		(1~10월)		(1~10월)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상당·신고	8,043	6,615	9,918	8,213	10,913	8,947	13,751	11,278	12,39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의정부 및 창원은 현재 회생법원 설치지역(14개) 중 센터가 미설치된 7개 지역(인천, 의정부, 창원, 춘천, 청주, 전주, 제주) 중 현재 구축 중인 인천 다음으로 관할 인구 및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많은 지역이므로 동 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¹⁰⁴⁾

[개인회생·파산 사건 현황]

(단위 : 건, %)

구분		관할 인구 (만명)	'21년		'22년		'23년		'24년		센터 설치
			법원 사건수	공단 구조	법원 사건수	공단 구조	법원 사건수	공단 구조	법원 사건수	공단 구조	
전국		5,146	130,113	19,533	131,429	19,461	162,256	23,814	169,602	23,480	
센터 설치 (7)	서울	943	26,101	4,079	27,399	4,549	33,676	4,970	34,169	4,222	'09년
	수원	876	18,969	3,439	18,762	2,425	24,668	3,536	28,464	3,270	'14년
	대전	396	10,476	1,193	10,382	1,068	12,407	1,054	13,187	946	'13년
	대구	493	12,409	1,975	12,803	1,774	15,711	2,137	15,304	2,547	'10년
	부산	336	7,799	2,799	8,263	2,893	13,613	3,367	17,383	3,774	'11년
	광주	325	6,933	1,609	6,678	1,948	7,872	2,432	7,962	1,894	'12년
	울산	147	4,600	751	4,709	841	4,754	614	4,276	543	'14년
센터 미설치 (7)	인천	426	12,561	852	12,038	1,260	15,189	1,157	15,871	1,447	'25년
	의정부	359	8,902	1,047	8,483	1,180	10,889	2,028	11,369	1,564	'25년 (추경)
	창원	292	8,684	769	8,597	647	7,641	1,557	4,919	2,089	
	춘천	151	2,644	485	2,521	176	4,136	157	4,505	186	-
	청주	160	3,680	67	3,871	77	4,601	161	4,855	142	-
	전주	175	4,166	362	4,222	497	4,814	463	4,871	559	-
	제주	67	1,735	106	1,828	126	2,285	181	2,467	297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104) 참고로,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당초 '인천, 의정부, 창원' 3개 지역에 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38억 8,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조정되어 2025년에는 인천 센터 신축 예산만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었었음.

다만, 신규로 구축되는 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우선, 연내에 의정부 및 창원 센터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인천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7월중으로 구축을 완료하고 근무를 시작할 예정임. 의정부 및 창원의 경우에도 현재 계획과 같이 연내에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중 근무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내에 구축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및 창원 센터 월별 추진 계획(안)]

구 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센터설립 TF 운영	○ T/F 구성	■					
	○ T/F 운영	■	■	■	■	■	■
2. 사무실 매입	○ 대상 부동산 물색	■	■				
	○ 매수대상 부동산 결정			■			
	○ 매매계약 체결			■			
3. 운영 계획 수립	○ 센터 운영계획 수립	■	■				
4. 내부 설비 공사	○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공사실시					■	
5 내부 전기·통신 공사	○ 공사계획 수립		■	■			
	○ 계약체결			■			
	○ 공사실시				■		
6 사무용 집기 등 비치	○ 집기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집기비치					■	■
7. 사무실 이전	○ 이전계획 수립					■	
	○ 계약체결					■	
	○ 이전실시					■	■
8. 개소	○ 근무개시일: '25.12월 중						■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동 추경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부의 법률구조 세부사업(1131-300) 예산의 증액이 없어서 신규로 추가되는 의정부·창원 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별도로 없으므로, 연내에 의정부·창원 센터를 구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센터 운영이 불가하여 상당기간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센터 구축 후 연내에라도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센터 위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구축된 센터 및 현재 구축 중인 인천의 경우 해당지역의 회생법원 및 공단 지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법원 근처에 센터를 설치하여 법원에 방문한 개인회생·파산신청자들이 센터를 방문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구분	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서울 중앙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초구 법원로4길 17 (서초동)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서초동)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유셀 5층(범어동)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유셀 5층(범어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2층(거제동)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2-3층(거제동)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지산동)	동구 준법로 3, 2층(지산동)	동구 준법로 3, 3층(지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둔산동)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둔산동)
수원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4(원천동), 행복프라자 3층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4(원천동), 행복프라자 3층
울산	남구 법대로 55(옥동)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옥동)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옥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미추홀구 매소홀로 388, 2층(학익동)
의정부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서부로 707, 2층(가능동)	고산동 ¹⁾ (예정)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4층(사파동)	성산구 사파동(예정)

1) 의정부지방법원이 '의정부시 고산동'으로 이전 예정임(기획재정부)

의정부 및 창원의 경우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또는 이전 예정지) 주변으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주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기금운용계

확변경안을 통하여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법원을 방문하는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위치로 조속히 선정하여 사무실 매입 등 후속절차를 일정 내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임.

둘째로, 현재도 공단 유튜브(법구공TV), 인스타그램(공단 어벤저스:Legal guardian) 및 블로그 등에 개인회생·파산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단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센터 홍보를 하고 있지만, 법률구조 사업 실수요자들의 센터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9%)이었으며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 피해자도 25.7%나 되었음.

[연령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분포현황]

(단위: 건)

구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인원(명)	2	5,382	10,091	3,094	1,477	670	233
비율(%)	0.01	25.69	48.17	14.77	7.05	3.20	1.11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자는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구조 사업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지원하는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임. 따라서 신규 센터 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외에 실수요자를 타케팅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센터의 위치 및 법률구조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으로 회생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제적으로 센터 사업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취약주거 거주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을 도심 외곽¹⁰⁵⁾ 또는 낙후지역¹⁰⁶⁾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보다 용이하게 센터를 방문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105) 도심·‘핫플’은 그나마 버틸 만... 도심 외곽은 ‘줄폐업’(신동아, 2024.8.24.) 등

106)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97.4%)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이며, 주택유형은 주로(49.1%)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임.(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0.3.))

의 센터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상담 외에도 비대면 상담인 챗봇상담,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대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센터(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공단 지부 등)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 인천, 의정부, 창원 센터 신축 이후에도 복권기금으로 향후 춘천, 전주, 청주, 제주에도 순차적으로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므로 센터 구축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8)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내 집행가능소요만을 반영할 필요(국유재산관리기금)

< 현 황 >

공용재산취득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신축」의 공사비를 비롯한 사업비가 98억 5,300만원 증액되어 지출계획안은 278억 2,8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법무부 원주 교도소 이전 신축」의 사업비가 99억 3,200만원 증액되어 지출계획안은 717억 9,5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또한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은 사업비가 50억원 증액되어 지출계획안은 118억 5,2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은 196억 4,400만원 증액되어 지출계획안은 372억 7,3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2025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계획	집행	당초 계획액	현계획 (A)	변경안 (B)	(B-A)	(B-A)/A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신축	5,877	3,827	12,543	17,975	27,828	9,853	54.8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49,831	47,314	51,521	61,863	71,795	9,932	16.1
해양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8,347	13,332	17,643	17,629	37,273	19,644	111.4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8,201	8,201	6,852	6,852	11,852	5,000	73.0

주: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별도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검토의견 >

조기 준공을 통한 대금 지급으로 건설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증액사업의 실제 집행가능성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소요만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¹⁰⁷⁾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으로 인한 지속적 저성장이 문제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경기침체 타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개별 사업 증액 필요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효과성, 사업의 집행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 가능 소요를 반영하여 조기 준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액을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¹⁰⁸⁾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과도한 증액으로 인하여 차년도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경우, 조기 대금 지급이 불가해지면서 통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당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107)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08) 기획재정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이번 증액사업의 경우 공정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이월액의 존재 및 2025년 4월과 5월 이루어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계획현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자체변경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 간 간격이 짧아 계획현액의 상당 부분이 미집행된 상황임.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이월 및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내역(내역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당초 계획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계획현액	추경 증액분	계획현액* (추경안)	총사업비
서울출입국·외 국인청 이전 신축	12,543	2,049	5,432	20,024	9,853	29,877	108,109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51,251	2,785	10,342	64,378	9,932	74,310	163,445
특수기록관 신축	6,852	-	-	6,852	5,000	11,852	23,388
완도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2,405	2,133	284	4,822	5,752	10,574	11,690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2,692	1,453	-	4,145	5,571	9,716	11,742
동해서 울릉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1,898	1,706	500	4,104	7,771	11,875	19,367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전년도 이월액 포함

또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 금액은 준공 목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올해 내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증액되진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증액사업 실집행 및 공정을 현황(6월 19일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공정율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	20,024	7,194	35.9	40.5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64,378	22,166	34.4	81.6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6,852	986	14.3	52.9
해양경찰청 완도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4,822	1,301	26.9	43.0
해양경찰청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4,145	702	16.9	25.0
해양경찰청 동해서 울릉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4,104	1,232	30.0	44.9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증액사업별 공사 기간]

사업명	공고서상 공기	준공 목표일 (추경 사업계획서 기준)	착공일	경과기간 (6.19. 기준)	준공 목표일 잔여 공기* (6.19. 기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착공일부터 930일	26.6.28.	23.12.12	556일	374일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착공일부터 1170일	25.12.27.	22.6.14.	1107일	192일
해경 특수기록관 신축	착공일부터 540일	26.3.	24.6.4.	380일	286일
완도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착공일부터 360일	25.12.	24.10.28.	234일	196일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착공일부터 376일	25.12.	24.10.7.	255일	196일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착공일부터 570일	26.6.	24.6.10.	374일	377일

자료: 기획재정부, 법무부, 해경청 제출 자료 재구성

*준공 목표일을 월까지만 제시한 경우 잔여 공기는 매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

[증액 사업의 공기 1일당 공정률]

사업명	잔여 공정률	당초 공기	목표일 준공 위한 잔여 공기	당초 공기 1일당 공정률* (A)	목표일 준공 위한 잔여 공기 1일당 공정률** (B)	1일당 공정률 비율 (B/A×100)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전 신축	59.5%	930일	374일	0.107%	0.159%	148.6%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18.4%	1170일	192일	0.085%	0.096%	112.9%
해경 특수기록관 신축	47.1%	540일	286일	0.185%	0.165%	89.2%
완도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57.0%	360일	196일	0.277%	0.291%	105.1%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75.0%	376일	196일	0.265%	0.382%	144.2%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55.1%	570일	377일	0.175%	0.146%	83.4%

*당초 공기 1일당 공정률=100%/당초 공기

** 목표일 준공 위한 잔여 공기 1일당 공정률=잔여 공정률/잔여 공기

증액 사업의 1일당 공정률 비율을 살펴볼 때,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을 제외한 사업들은 ‘당초 공기 1일당 공정률’에 비해 ‘목표일 준공 위한 잔여공기 1일당 공정률’이 더 낮거나, 10% 내외로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반면,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의 경우 ‘당초 공기 1일당 공정률’은 0.27%인데 비하여 ‘목표일 준공 위한 잔여공기 1일당 공정률’은 0.38%에 이르고 있어 목표일 준공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공정 속도보다 40% 이상 빨라져야 함.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 공기 1일당 공정률’은 0.11%인데 비하여 ‘목표일 준공 위한 잔여공기 1일당 공정률’은 0.158%에 이르고 있어 당초 계획된 공정 속도보다 40% 이상 빨라져야 목표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비록, 초기 골조 공사 단계에서 후기 마감 단계의 공사보다 소요되는 공기가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타 사업 역시 골조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사업 대비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 사업에서 필요한 공정 속도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임¹⁰⁹⁾.

109)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의 6월 26일 공정률은 27%,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의 6월 공정률은 42.5%로 당초 계획 공정률 32%와 43.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급자재 계약 및 공급 시일과 같은 고정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 하반기에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공정 지연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된 공정 속도에 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할 경우 안전 관리 등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 공정 속도보다 40% 이상 증가된 속도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키는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과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의 경우 당초 계획된 공정률에 비해 지나치게 단축된 공기를 상정하여 안전 관리 등에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이 단축된 공기에 따라 사업 예산 증액이 과다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점,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과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의 실집행률이 각각 35.9%와 16.9%에 머무르고 있어 낮은 실집행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당초 공기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소요만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국공채 발행수입(외국환평형기금): 기금의 원화재원 운용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현 황 >

국공채발행수입은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에서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조 6,560억원 대비 3조원(△13.9%) 감액된 18조 6,56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공채 발행수입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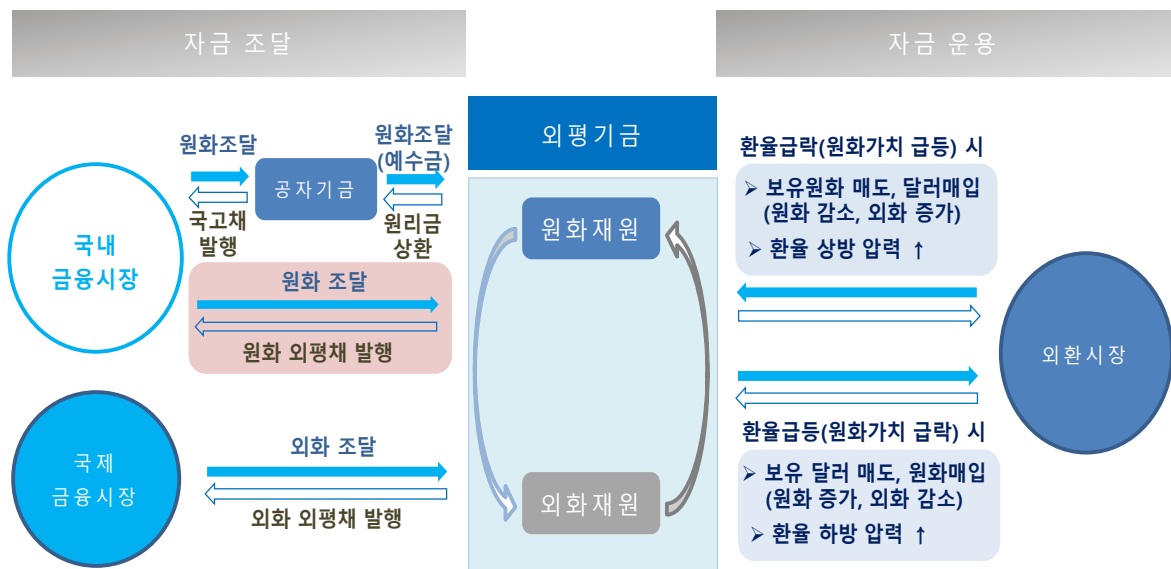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계획	수납	당초 계획액	제1회 추경 (A)	변경안 (B)	(B-A)	(B-A)/A
국공채 발행수입	19,690,000	1,802,647	21,656,000	21,656,000	18,656,000	△3,000,000	△13.9

자료: 기획재정부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거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원화를 조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재원을 조달하여 외환시장 안정화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

[외국환평형기금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당초 2025년도 계획안은 외화표시 외평채 12억 달러(1조 6,560억원)¹¹⁰⁾와 원화표시 외평채 20조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¹¹¹⁾ 그런데 환율 상승 등으로 외화재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져 제1회 추경에서 예산총칙 상 외평채 발행한도가 수정되어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가 증액(12억 달러→35억 달러)되고, 동 금액만큼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가 감액(20조원→16조 6,650억원)되었음. 제2회 추경안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16조 6,650억원→13조 6,650억원) 감액하려는 것임.

[2025년도 외평채 발행한도 변경 경과]

구 분	외화표시 외평채		원화표시 외평채(B)	합 계(A+B)
	달러화 기준	원화 기준(A)		
당 초	12억 달러	1조 6,560억원	20조원	21조 6,560억원
제1회 추경	35억 달러	4조 9,910억원	16조 6,650억원	21조 6,560억원
(증감)	(23억 달러)	(3조 3,350억원)	(△3조 3,350억원)	(-)
제2회 추경안	35억 달러	4조 9,910억원	13조 6,650억원	18조 6,560원
(증감)	(-)	(-)	(△3조원)	(△3조원)

< 검토의견 >

첫째, 외평기금이 원화재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국고채 및 외평채 발행 등에 따른 조달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이상의 원화재원을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변경안과 같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 감액해도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운용규모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의 원화재원 운용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최근 몇 년간 달러화를 순매도하는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로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감액해도 올해 원화재원 순증요인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말 기준 외평기금 원화재원은 환율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던 시기의 원화재원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있음.

110) 환율은 '1,380원/달러'가 적용됨

111)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원화재원을 예수할 때 외평기금이 부담하는 예수금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짧은 만기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달비용을 감축하고자 2025년부터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고 있음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수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임. 따라서, 환율의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경우, 환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원화재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2018년 이후에는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기획재정부(외평기금)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 위주의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를 실시하여 2018년 하반기 1.87억 달러, 2019년 66.7억 달러, 2021년 141.3억 달러, 2022년 458.67억 달러, 2023년 96.13억 달러, 2024년 111.74억 달러를 순매도하고, 2020년에만 53.47억 달러를 순매수했음. 그리고 외환보유액은 2021년 말 4,631.2억 달러에서 2025년 5월 4,046.0억 달러까지 567.2억 달러 감소하였음.

[2018년~2024년 외환당국(외평기금+한국은행) 순거래 규모]

연도	분기별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8년	(미공개)		△1.87억달러		△1.87억달러
2019년	△38.0억달러		△28.7억달러	0.0억달러	△66.7억달러
2020년	△58.51억달러	△3.45억달러	0.0억달러	115.43억달러	53.47억달러
2021년	△1.03억 달러	0.0억 달러	△71.42억 달러	△68.85억 달러	△141.3억 달러
2022년	△83.11억 달러	△154.09억 달러	△175.43억 달러	△46.04억 달러	△458.67억 달러
2023년	△21.0억 달러	△59.73억 달러	△35.29억 달러	19.89억 달러	△96.13억 달러
2024년	△18.15억 달러	△57.96억 달러	1.92억 달러	△37.55억 달러	△111.74억 달러

주 1) 해당 기간 달러화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차감한 값

2) 외환당국의 순거래 규모는 2018년 하반기 순거래액부터 공개되었음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2021년~2025년 외환보유액]

연도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2025년 5월
외환보유액	4,631.2억 달러	4,231.6억 달러	4,201.5억 달러	4,156.0억 달러	4,046.0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이와 같은 최근 수년간의 외환시장 안정화조치에 비추어볼 때, 외환당국이 원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매도하는 조치가 이어져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¹¹²⁾

112) 다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연도별로 공자기금에서 49.8조원과 52.6조원이 신규 예수된 반면, 64.2조원과 94.6조원 규모의 예수금이 상환되어 원화재원의 감소요인이 있었음

그리고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를 3조원 감액한 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13.7조원 및 공자기금 예수금 38.1조원 등 원화재원이 51.8조원 증가할 요인이 있음. 그리고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32.9조원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0조원 등 원화재원이 37.9조원 감소할 요인이 있음. 이를 종합하면 2025년 원화재원 순증 요인은 +13.9조원임.

[2025년 외평기금 원화재원의 주요 증감요인]

구분	증가요인(+)	감소요인(-)	순증
당초	-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u>20조원</u> - 공자기금 예수: 38.1조원	-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32.9조원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0조원	+20.2조원
	총 58.1조원	총 37.9조원	
제1회 추경	-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u>16.7조원</u> - 공자기금 예수: 38.1조원	- 공자기금 상환: 32.9조원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0조원	+16.9조원
	총 54.8조원	총 37.9조원	
제2회 추경안	-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u>13.7조원</u> - 공자기금 예수: 38.1조원	- 공자기금 상환: 32.9조원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0조원	+13.9조원
	총 51.8조원	총 37.9조원	

주 1) 외환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인한 증감은 제외

2) 기금운용계획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상환을 위한 원화 지출 18조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4년에 원화표시 외평채가 미발행되어 지출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감소요인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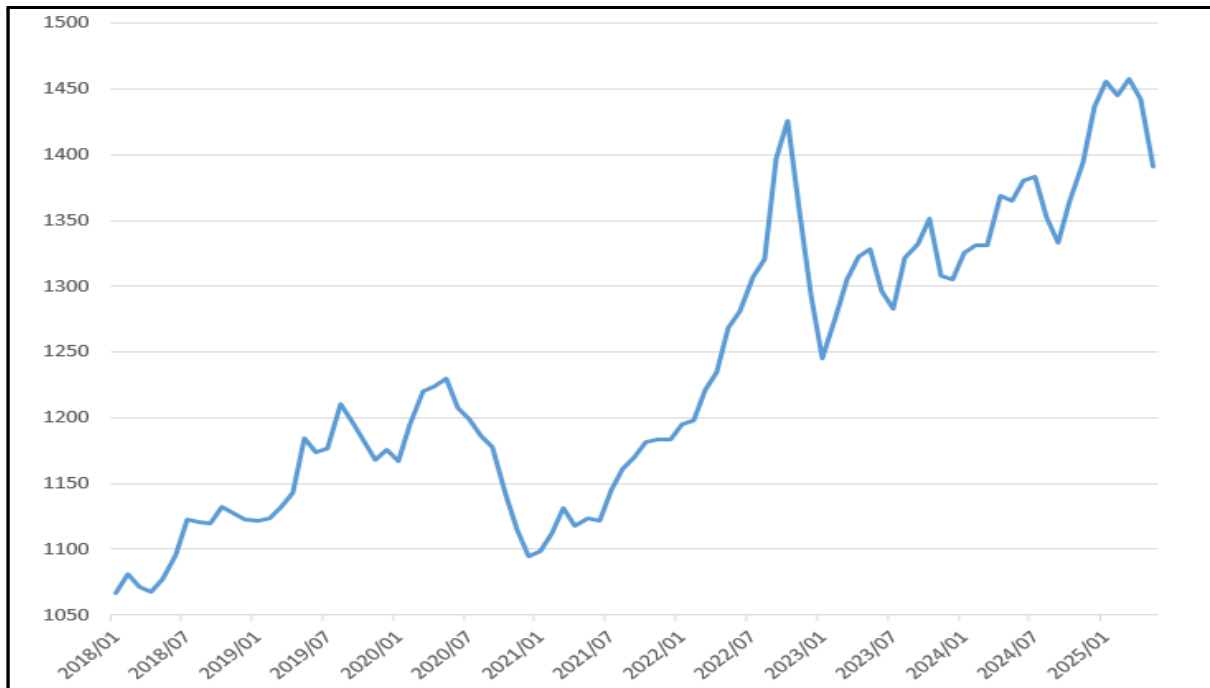
2025년 6월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1,384.3원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환율보다 높은 수준임.

[연도별 평균 원/달러 환율 추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원/달러 환율	1,100.58	1,166.11	1,180.01	1,144.61	1,292.2	1,305.93	1,364.3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월별 평균 원/달러 환율 추이(2018년 1월~2025년 5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로 인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안과 같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 감액해도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13.9조원 순증할 요인이 있으므로 환율이 더 낮았던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의 원화재원 수준보다 2025년도 말 원화재원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재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 3조원 감액 후에도 기금의 원화재원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② 2025년에도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외평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2025년의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로 인한 원화재원의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원화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낮아짐.

2024년과 2025년의 월별 환율 동향을 비교해보면, 2025년에는 환율이 2024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4년~2025년 월별 환율 동향]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원/달러	평균	1,325	1,331	1,331	1,369	1,365	1,379	1,383	1,351	1,333	1,367	1,395	1,439	1,364
	증가	1,334	1,331	1,347	1,382	1,384	1,376	1,376	1,338	1,308	1,380	1,395	1,472	1,369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원/달러	평균	1,454	1,445	1,459	1,441	1,390	-	-	-	-	-	-	-	-
	증가	1,453	1,463	1,473	1,421	1,380	-	-	-	-	-	-	-	-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6월 월간 환율전망(K-SURE FX Market Monthly)'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 주요 국내기관은 2025년 2분기 1,402.25원, 3분기 1,362.50원, 4분기 1,372.5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국외기관은 2025년 2분기 1,401.75원, 3분기 1,375.75원, 4분기 1,366.50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내외 주요기관 2025년 2분기~4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

기관명		2025년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	신한은행	1,400	1,350	1,370
	우리은행	1,410	1,390	1,430
	하나은행	1,400	1,350	1,370
	국민은행	1,399	1,360	1,320
	평균	1,402.25	1,362.50	1,372.50
국외	BNP Paribas	1,390	1,370	1,360
	Wells Fargo	1,400	1,390	1,370
	JPMorgan Chase	1,380	1,375	1,365
	Citigroup	1,437	1,368	1,356
	평균	1,401.75	1,375.75	1,366.50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6월 월간 환율전망(K-SURE FX Market Monthly)'

이러한 전망처럼 연중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달러화를 매수하기 위한 원화재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의 사례와 같이 달러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외환시장 안정화조치가 실시되어 2025년에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더욱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즉, 2025년 환율 수준이 2024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달러화를 순 매도하는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로 원화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된다고 볼 수 있음.

둘째, 국가채무 순증폭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금의 원화재원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의 원화재원 조달 규모를 축소할 때, 변경안과 같은 외평채 발행한도의 감액뿐만 아니라 공자기금 예수 규모 축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외평기금은 ①공자기금이 발행한 국고채를 통해 조달된 원화를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받거나 ②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직접 원화를 조달함. 2025년도 외평기금운용계획안 상 공자기금 예수 계획액은 38조 662억 5,100만원임.

[2025년도 기금예수금(공자기금→외평기금) 계획]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B-A)/A
		계획(A)	수납	계획(B)		
기금예수금	49,801,850	56,647,550	52,647,550	38,066,251	△18,581,299	△32.8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원화재원 조달규모를 줄이기 위해 외평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감액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하였음.

2025년 6월 23일 기준 원화표시 외평채(1년 만기)는 여섯 차례에 걸쳐 총 7조 9,400억 원 발행되었음. 월별로는 1월 기준 8,000억원이 발행되고, 5월 기준 발행규모가 1조 8,20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6월에는 발행규모가 1조 7,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금리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임.¹¹³⁾ 즉, 직접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를 조달하는 것보다 조달비용이 낮음.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에는 외평채 발행금리가 2.750%~2.690%인데 공자기금 예수금리는 2.975%(1조원 한도 내 2.970%)로 더 높고, 2분기에는 2.375%~2.460%인데 공자기금 예수금리는 2.794%(3조원 한도 내 2.688%)로 더 높음.

113) 이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만기가 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의 만기보다 전반적으로 짧은 것에 기인함

[2025년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현황 및 공자기금 예수금리]

(단위: 십억원)

구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현황						공자기금 예수금리
	발행일자	만기	만기일자	발행규모	응찰률	발행금리	
'25년 1분기	2025.1.10	1년	2026.1.10	800	173.8%	2.750%	2.975% (예수금 1조원 한도 내 2.970%)
	2025.2.10		2026.2.10	800	291.3%	2.690%	
	2025.3.10		2026.3.10	1,200	170.8%	2.690%	
'25년 2분기	2025.4.10		2026.4.10	1,620	221.9%	2.460%	2.794% (예수금 3조원 한도 내 2.688%)
	2025.5.10.		2026.5.10.	1,820	151.7%	2.375%	
	2025.6.10.		2026.6.10.	1,700	171.4%	2.415%	
합 계				7,94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를 고려하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조달을 축소할 때, 정부가 제출한 변경안과 같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공자기금 예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외평기금의 이자지출 부담을 줄여 외평기금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자기금 예수 규모를 축소하면 공자기금은 그만큼 국고채 발행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감액하는 것처럼 국가채무 순증폭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기금의 원화재원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원화재원의 운용규모를 추가적으로 축소한다면, 변경안과 같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를 추가 감액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